

第304回國會
(臨時會)

法制司法委員會會議錄

第 2 號

國會事務處

日 時 2011年12月29日(木)

場 所 法制司法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1. 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
2.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 국가보훈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6.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계속)
8.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계속)
9.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안
10.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1.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12.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3.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4.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5. 축산물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6.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안(계속)
17.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18. 선박관리산업발전법안
19. 해외건설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0. 임대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21. 항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2.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3.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4.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5.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6. 건설기술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7.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8.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
29. 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30. 수난구호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31.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32.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33.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3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5.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안(대안)
36.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37.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계속)
38.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안(대안)
39.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40.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4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42.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43.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44.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45.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46. 교육국제화특구의 지정·운영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
47.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48.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49.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50.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51.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52. 학교체육진흥법안(대안)
53.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대안)
54.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55. 유네스코 활동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6.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57.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58.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59.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60.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61.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62.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63.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64.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65.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66.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67.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68.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69.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70.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71. 청소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72. 청소년복지지원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73.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74.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75. 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76.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77. 이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안

78.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79.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80.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81.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8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8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84.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85. 관광숙박시설 확충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안
86.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87.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88.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89.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90.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91.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92.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93.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94.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95.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96.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대안)
97.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대안)
98.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99.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00.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審査된案件

1. 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이명수·김을동·김창수·권선택·류근찬·이재선·김용구·심대평·임영호·김낙성 의원 발의) 8
2.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선숙 의원 대표발의)(박선숙·신건·김성곤·조배숙·강창일·강봉균·박영선·홍재형·오제세·김효석·박주선·백재현·조영택·신낙균 의원 발의) 8
3. 국가보훈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호연 의원 대표발의)(김호연·구상찬·박민식·박준선·서병수·유기준·윤상현·이명규·이사철·이진복·임동규·주광덕·현기환 의원 발의) 8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 8
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 8
6.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 8
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제출)(계속) 8
8.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제출)(계속) 8
9.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안(김우남 의원 대표발의)(김우남·김성수·김상희·김효석·김영록·송훈석·정해걸·오제세·강기갑·강석호·조경태·이용희·김춘진·김학용·최인기 의원 발의) 8
10.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석호 의원 대표발의)(강석호·김학용·김영록·신성범·성윤환·정해걸·황영철·이사철·이철우·김호연·주성영·김우남·나성린·홍일표·여상규·박보환·김성희·안효대·윤영·유재중·이병석·김성수·차명진·유일호·이화수 의원 발의) 8
11.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우남 의원 대표발의)(김우남·강기정·조경태·

이용희 · 김효석 · 오제세 · 이사철 · 송훈석 · 최인기 · 최영희 · 김성수 의원 발의)	8
12.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수산식품위원장 제출)	8
13.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수산식품위원장 제출)	8
14.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수산식품위원장 제출)	8
15. 축산물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수산식품위원장 제출)	8
16.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안(김우남 의원 대표발의)(김우남 · 강창일 · 양승조 · 조정태 · 강기정 · 원희룡 · 유성엽 · 김영록 · 김재운 · 김동철 · 최규성 · 황영철 의원 발의)(계속)	8
17.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장광근 의원 대표발의)(장광근 · 조원진 · 윤영 · 신영수 · 박상은 · 이병석 · 이해봉 · 강성천 · 송훈석 · 손범규 의원 발의)(계속)	10
18. 선박관리산업발전법안(현기환 의원 대표발의)(현기환 · 권영진 · 김정권 · 서병수 · 이진복 · 김용구 · 황영철 · 김세연 · 유재중 · 이한성 · 장제원 · 김호연 의원 발의)(계속)	10
19. 해외건설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장운석 의원 대표발의)(장운석 · 이정선 · 이종혁 · 박대해 · 이한성 · 박민식 · 홍사덕 · 김옥이 · 송광호 · 최구식 의원 발의)(계속)	10
20. 임대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안홍준 의원 대표발의)(안홍준 · 송민순 · 원희목 · 유재중 · 윤석용 · 현기환 · 손숙미 · 백성운 · 이찬열 · 이한성 의원 발의)	10
21. 항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해양위원장 제출)	10
22.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해양위원장 제출)	10
23.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해양위원장 제출)	10
24.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해양위원장 제출)	10
25.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해양위원장 제출)	10
26. 건설기술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해양위원장 제출)	11
27.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해양위원장 제출)	11
28. 장애인 · 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국토해양위원장 제출)	11
29. 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해양위원장 제출)	11
30. 수난구호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해양위원장 제출)	11
31.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해양위원장 제출)	11
32.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최규성 의원 대표발의)(최규성 · 박기춘 · 백재현 · 유선호 · 강창일 · 강기갑 · 노영민 · 이찬열 · 오제세 · 김재운 의원 발의)	11
33.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해양위원장 제출)	11
3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11
35.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안(대안)(국토해양위원장 제출)	11
36.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해양위원장 제출)	11
37.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계속)	11
38.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	17
39.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	17
40.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	17
4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	17
42.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	17
43.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	17
44.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	17
45.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수성 의원 대표발의)(정수성 · 이종혁 · 이인기 · 한기호 · 박대해 · 김을동 · 정갑윤 · 최병국 · 임동규 · 김소남 · 김태원 · 김정권 · 안경률 · 유정현 · 진영 · 윤상일 · 이명수 · 신지호 · 안효대 · 김충조 · 문학진 · 장세환 의원 발의)	17

46. 교육국제화특구의 지정·운영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서상기 의원 대표발의)(서상기·홍사덕·김태환·이해봉·유승민·박종근·배영식·정희수·주성영·이명규·조전혁·최경환·이인기·김성조·박보환·주호영·조원진·원희목·이한구·권영진·김세연·김정권·손숙미·정해걸·한선교·배은희·안상수·이화수·이정현·이철우·이성현 의원 발의) 18
47.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과학기술위원장 제출) 18
48.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과학기술위원장 제출) 18
49.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과학기술위원장 제출) 18
50.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과학기술위원장 제출) 18
51.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과학기술위원장 제출) 18
52. 학교체육진흥법안(대안)(교육과학기술위원장 제출) 18
53.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대안)(교육과학기술위원장 제출) 18
54.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과학기술위원장 제출) 18
55. 유네스코 활동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18
17.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장광근 의원 대표발의)(장광근·조원진·윤영·신영수·박상은·이병석·이해봉·강성천·송훈석·손범규 의원 발의)(계속) 22
18. 선박관리산업발전법안(현기환 의원 대표발의)(현기환·권영진·김정권·서병수·이진복·김용구·황영철·김세연·유재중·이한성·장제원·김호연 의원 발의)(계속) 22
19. 해외건설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장운석 의원 대표발의)(장운석·이정선·이종혁·박대해·이한성·박민식·홍사덕·김옥이·송광호·최구식 의원 발의)(계속) 22
20. 임대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안홍준 의원 대표발의)(안홍준·송민순·원희목·유재중·윤석용·현기환·손숙미·백성운·이찬열·이한성 의원 발의)(계속) 22
21. 항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해양위원장 제출)(계속) 22
22.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해양위원장 제출)(계속) 22
23.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해양위원장 제출)(계속) 22
24.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해양위원장 제출)(계속) 22
25.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해양위원장 제출)(계속) 22
26. 건설기술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해양위원장 제출)(계속) 22
27.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해양위원장 제출)(계속) 22
28.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국토해양위원장 제출)(계속) 22
29. 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해양위원장 제출)(계속) 22
30. 수난구호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해양위원장 제출)(계속) 22
31.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해양위원장 제출)(계속) 22
32.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최규성 의원 대표발의)(최규성·박기춘·백재현·유선호·강창일·강기갑·노영민·이찬열·오제세·김재운 의원 발의)(계속) 23
33.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해양위원장 제출)(계속) 23
3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23
35.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안(대안)(국토해양위원장 제출)(계속) 23
36.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해양위원장 제출)(계속) 23
37.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계속) 23
38.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계속) 23
39.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계속) 23
40.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계속) 23
4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계속) 23

42.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계속)	23
43.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계속)	23
44.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계속)	23
45.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수성 의원 대표발의)(정수성 · 이종혁 · 이인기 · 한기호 · 박대해 · 김을동 · 정갑윤 · 최병국 · 임동규 · 김소남 · 김태원 · 김정권 · 안경률 · 유정현 · 진영 · 윤상일 · 이명수 · 신지호 · 안호대 · 김충조 · 문학진 · 장세환 의원 발의)(계속)	23
46. 교육국제화특구의 지정 · 운영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서상기 의원 대표발의)(서상기 · 홍사덕 · 김태환 · 이해봉 · 유승민 · 박종근 · 배영식 · 정희수 · 주성영 · 이명규 · 조전혁 · 최경환 · 이인기 · 김성조 · 박보환 · 주호영 · 조원진 · 원희목 · 이한구 · 권영진 · 김세연 · 김정권 · 손숙미 · 정해걸 · 한선교 · 배은희 · 안상수 · 이화수 · 이정현 · 이철우 · 이성현 의원 발의)(계속)	23
47. 초 · 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과학기술위원장 제출)(계속)	23
48.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과학기술위원장 제출)(계속)	23
49.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과학기술위원장 제출)(계속)	23
50.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과학기술위원장 제출)(계속)	23
51.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과학기술위원장 제출)(계속)	23
52. 학교체육진흥법안(대안)(교육과학기술위원장 제출)(계속)	23
53.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 · 운영에 관한 법률안(대안)(교육과학기술위원장 제출)(계속)	23
54.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과학기술위원장 제출)(계속)	23
55. 유네스코 활동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23
63. 환경분야 시험 · 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	24
64.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	24
65.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24
66.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계속)	24
67.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24
56.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영 의원 대표발의)(이주영 · 강석호 · 강성천 · 김성식 · 김성태 · 김재정 · 손범규 · 유기준 · 유일호 · 이명규 · 이범관 · 이범래 · 이성현 · 이화수 · 정갑윤 · 정진섭 · 정대근 · 최구식 · 허원제 · 황영철 의원 발의)	25
57.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조해진 의원 대표발의)(조해진 · 이춘식 · 윤진식 · 김형오 · 주광덕 · 유정현 · 임해규 · 강성천 · 이은재 · 김호연 의원 발의)	25
58.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25
59.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25
60.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구 의원 대표발의)(김용구 · 이명수 · 오제세 · 임영호 · 김낙성 · 김창수 · 변웅전 · 이영애 · 주승용 · 신낙균 · 조배숙 · 김성곤 · 강성천 · 안규백 · 신영수 · 이재선 · 권선택 · 유정현 · 류근찬 · 김재균 · 이낙연 · 박선영 · 정진섭 · 홍희덕 · 손범규 · 정병국 · 홍영표 · 이미경 의원 발의)	25
61.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	25
62.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	25
68. 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장병완 의원 대표발의)(장병완 · 이종걸 · 양승조 · 유선호 · 전병헌 · 최종원 · 김재균 · 강기정 · 이춘식 · 조정식 · 안규백 의원 발의)	26
69.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애주 의원 대표발의)(이애주 · 윤석용 · 유승민 · 이윤성 · 임해규 · 유재중 · 정옥임 · 김혜성 · 이정선 · 김성동 의원 발의)	26
70.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춘진 의원 대표발의)(김춘진 · 김영진 · 오제세 · 유성엽 · 김성곤 · 안민석 · 김영록 · 이용경 · 최재성 · 강창일 의원 발의)	26
71. 청소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여성가족위원장 제출)	26

72. 청소년복지지원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여성가족위원장 제출)	26
73.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여성가족위원장 제출)	26
74.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26
75. 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26
76.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여성가족위원장 제출)(계속)	26
77. 이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안(허원제 의원 대표발의)(허원제·유정현·남경필·정의화·이명규·이진복·손숙미·이한성·홍정욱·정병국·최구식·유기준·원희룡·원희목·이경제·안홍준·안상수·이성현·강승규·김용태·김옥이·한선교 의원 발의)	28
78.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을동 의원 대표발의)(김을동·홍사덕·이한성·유성엽·이명수·이사철·노철래·조경태·신상진·김성동·김태환·정해걸·정미경·조진래·한기호·한선교·진성호·최종원·조윤선·김재윤·조진형 의원 발의)	28
79.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전병헌 의원 대표발의)(전병헌·김우남·김재윤·김학송·김부겸·조영택·유선호·김춘진·최규성·홍영표·백재현·전혜숙 의원 발의)	28
80.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장 제출)	28
81.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장 제출)	28
8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장 제출)	28
8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장 제출)(계속)	28
84.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장 제출)(계속)	28
85. 관광숙박시설 확충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안(조윤선 의원 대표발의)(조윤선·유기준·원혜영·고홍길·이정선·이법래·나경원·강용석·이두아·김성동·이병석·구상찬·박준선·권영진·홍사덕·조진형·나성린·박진·이한성·정두언·한선교·허원제·이철우·진성호·장광근·황영철·신성범·김성수·조전혁·이춘식·유일호·이은재·이사철·배은희·진영·임동규·최경희·이성현·김금래·황진하·김장수·이정현·강명순 의원 발의)	28
86.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환 의원 대표발의)(김태환·박보환·이철우·정희수·정해걸·김을동·최구식·정갑윤·이명규·박민식·이정선·배은희·이사철 의원 발의)	34
87.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지식경제위원장 제출)	34
88.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지식경제위원장 제출)	34
89.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34
90.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지식경제위원장 제출)	34
91.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노영민 의원 대표발의)(노영민·최규성·강창일·주승용·김재균·유선호·김창수·문학진·박우순·이찬열·전병헌·송훈석·김진표·홍재형·김영환 의원 발의)	34
92.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균 의원 대표발의)(김재균·노영민·주승용·강창일·김동철·양승조·박주선·장세환·전병헌·김상희 의원 발의)	34
93.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지식경제위원장 제출)	34
94.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지식경제위원장 제출)	34
95.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34
96.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34
97.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34
98.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34
99.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34
100.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34

(16시38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4회 국회(임시회) 제2

○위원장 **우윤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 법제사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는 어저께 195건을 처리한 데 이어서 오늘 또 처리해야 할 안건이 한 100여 건 정도, 많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결정족수 관계로 이 회의가 끝날 때까지 자리를 꼭 좀 지켜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타 상임위원회 소관 법안을 상정하기 전에 국무위원 대리출석과 관련해서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전국 시·도 교육감 회의 주제로 지금 대구에 아마 내려가 있는 것 같습니다, 대구의 중학생 자살 사건 관련해서.

긴급한 회의라고 생각되어서 양해를 해 줍니다.

그리고 지금 본회의가 계속되고 있어서 일부 국무위원들께서 오늘 우리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고 대리출석을 요청한 경우는 허가하여 주었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 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이명수·김을동·김창수·권선택·류근찬·이재선·김용구·심대평·임영호·김낙성 의원 발의)
2.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선숙 의원 대표발의)(박선숙·신건·김성곤·조배숙·강창일·강봉균·박영선·홍재형·오제세·김효석·박주선·백재현·조영택·신낙균 의원 발의)
3. 국가보훈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호연 의원 대표발의)(김호연·구상찬·박민식·박준선·서병수·유기준·윤상현·이명규·이사철·이진복·임동규·주광덕·현기환 의원 발의)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
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
6.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
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제출)(계속)
8.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제출)(계속)
9.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안

(김우남 의원 대표발의)(김우남·김성수·김상희·김효석·김영록·송훈석·정해걸·오제세·강기갑·강석호·조정태·이용희·김춘진·김학용·최인기 의원 발의)

10.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석호 의원 대표발의)(강석호·김학용·김영록·신성범·성윤환·정해걸·황영철·이사철·이철우·김호연·주성영·김우남·나성린·홍일표·여상규·박보환·김성희·안효대·윤영·유재중·이병석·김성수·차명진·유일호·이화수 의원 발의)
11.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우남 의원 대표발의)(김우남·강기정·조정태·이용희·김효석·오제세·이사철·송훈석·최인기·최영희·김성수 의원 발의)
12.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수산식품위원장 제출)
13.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수산식품위원장 제출)
14.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수산식품위원장 제출)
15. 축산물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수산식품위원장 제출)
16.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안(김우남 의원 대표발의)(김우남·강창일·양승조·조정태·강기정·원희룡·유성엽·김영록·김재윤·김동철·최규성·황영철 의원 발의)(계속)
(16시40분)

○위원장 우윤근 그러면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이명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항 박선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3항 김호연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보훈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4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5항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6항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7항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8항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9항 김우남 의원이 대표발의한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안, 의사일정 제10항 강석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안, 의사일정 제11항 김우남 의원이 대표발의한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2항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13항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14항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15항 축산물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16항 김우남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안, 이상 16건의 법률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상 13건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이한규** 정무위 소관 법률안입니다.

행정심판법,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국가보훈기본법,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이상 5건의 일부개정법률안은 체계 및 자구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표현을 통일하는 경미한 자구 1개를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식품위 소관입니다.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체계 및 자구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안은 용어 순화 등 14개 사항을 수정하였습니다.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위임 규정 1개 사항을 정리하였습니다.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하나의 조문을 정리하는 등 경미한 자구 1개를 수정하였습니다.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정확한 용어 사용 등 7개 사항을 수정하였습니다.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중복 표현을 간결하게 정리하는 8개 사항을 수정하였습니다.

축산물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개정 조문 반영 등 3개 사항을 수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13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우윤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체토론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바로 질의를 종결하고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아마 조금 시간이……

다 오셨네요.

○**신지호** 위원 간사 어디 갔어요?

○**위원장 우윤근** 간사께서 무슨 바쁜 일정이 있는 관계로……

의사일정 제1항, 제2항, 제3항, 제5항과 제6항, 제14항의 법률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7항부터 제13항까지, 제15항, 제16항의 법률안에 대하여는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받아들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그리고 어제 전체회의에서 의사일정 제7항과 관련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두아 위원님의 수정의견에 따라서 제46조의2제1항제2호를 ‘제휴법인의 주주 1명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 이렇게 수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위원님들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7항은 이렇게 수정하고 의사일정 제8항도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김학재 위원님의 수정의견에 따라서 제12조 중 제출한 자료 다음에 괄호로 ‘신고필증을 포함한다’라는 내용을 명기하도록 수정하고자 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도 다른 위원님들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제16항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안은 이용희 위원님의 수정의견에 따라서 제2조(정의) 조항에서 ‘과수, 화훼, 채소’ 대신에 ‘밀, 콩, 고추, 사료작물 등’으로 수정하고 직불금 지급에 관련된 세부사항을 대통령령에서 규정하도록 이렇게 수정하고자 하는데 장관님도 이의가 없으시지요?

○**기획재정부장관 박재완** 예, 이미 합의하였습니다.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서규용** 아니, 그런데 고추, 마늘이 들어가는데 마늘이 빠졌네요.

○**위원장 우윤근** 마늘이 빠졌어요?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서규용** 예.

○위원장 우윤근 아니, 고추는 넣었는데요, 마늘……

○이용희 위원 마늘 들어 있는데 왜 빠져요?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서규용 그런데 말씀은 안하셔 가지고……

○위원장 우윤근 아니, 마늘이……

마늘이 중요한 건데, 다시 확인해 봐.

아니요, 여기에……

죄송합니다. 아니, 여기 원안에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마늘이 빠졌네요.

다시 하겠습니다.

16항에 2조(정의) 조항에서 ‘과수, 화훼, 채소’ 대신에 ‘밀, 콩, 고추, 마늘, 사료작물 등’으로 이렇게 수정하고……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서규용 거기에 또 보리가 빠졌는데요.

○위원장 우윤근 아니, 수석전문위원 이게 보리가 빠졌는가 확인해 봐요. 어떻게 된 거예요?

○수석전문위원 이한규 말을 줄여서 그렇지 다 들어 있습니다.

○위원장 우윤근 말을 줄이면 되나, 이 사람아.

말을 줄여서, 중요한 건데, 보리하고 마늘 말을 줄이면…… 법안을 하는데 말을 줄이다니. 그게 말이 되는 거요? 쫓아 봐요.

죄송합니다.

다시 또 하겠습니다.

16항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안은 제2조(정의) 조항에서 ‘과수, 화훼, 채소’ 대신에……

순서는 상관없어요?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서규용 예, 괜찮습니다.

○기획재정부장관 박재완 죄송합니다만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위원장 우윤근 그러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보리, 밀, 콩, 고추, 마늘, 사료작물 등으로’ 됐습니까, 장관님?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서규용 예.

○기획재정부장관 박재완 아니, 원안에 ‘보리, 과수, 화훼, 채소’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게 ‘과수, 화훼, 채소 대신에’라고 하시면 보리가 앞에 있기 때문에 보리를 굳이 추가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만약 그렇게 하시면 ‘보리, 보리’ 이렇게 법문이 정리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우윤근 갑자기 이러니까 굉장히 헛갈리는데요.

지금 ‘보리, 밀’ 제가 어문학자도 아니고……

자료를 원안을 줘야지.

죄송합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상임위 의결안에는 2조4호에서 ‘보리, 과수, 화훼, 채소, 그 밖에 대통령으로 정하는 식물’ 이렇게 된 부분을 ‘보리, 밀, 콩, 고추, 마늘, 사료작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물’ 이렇게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서규용 예, 됐습니다.

○기획재정부장관 박재완 됐습니다.

○위원장 우윤근 죄송합니다.

그러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그리고 7항, 8항, 16항에 대해서는 전체회의에서 수정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7.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장광근

의원 대표발의)(장광근·조원진·윤영·신영수·박상은·이병석·이해봉·강성천·송훈석·손범규 의원 발의)

18. 선박관리산업발전법안(현기환 의원 대표

발의)(현기환·권영진·김정권·서병수·이진복·김용구·황영철·김세연·유재중·이한성·장제원·김호연 의원 발의)

19. 해외건설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장윤석 의원

대표발의)(장윤석·이정선·이종혁·박대해·이한성·박민식·홍사덕·김옥이·송광호·최구식 의원 발의)

20. 임대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안홍준 의원

대표발의)(안홍준·송민준·원희목·유재중·윤석용·현기환·손숙미·백성운·이찬열·이한성 의원 발의)

21. 항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해양위원장 제출)

22.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해양위원장 제출)

23.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해양위원장 제출)

24.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해양위원장 제출)

25.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해양위원장 제출)

26. 건설기술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해양위원장 제출)
27.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해양위원장 제출)
28.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국토해양위원장 제출)
29. 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해양위원장 제출)
30. 수난구호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해양위원장 제출)
31.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해양위원장 제출)
32.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최규성 의원 대표발의)(최규성·박기춘·백재현·유선호·장창일·장기갑·노영민·이찬열·오제세·김재윤 의원 발의)
33.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해양위원장 제출)
3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35.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안(대안)(국토해양위원장 제출)
36.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해양위원장 제출)
37.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계속)

(16시51분)

○위원장 우윤근 이어서 의사일정 제17항 장광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8항 현기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선박관리산업발전법안, 의사일정 제19항 장윤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해외건설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0항 안홍준 의원이 대표발의한 임대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1항 항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22항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23항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24항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25항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26항 건설기술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27항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28항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29항

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30항 수난구호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31항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32항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33항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34항 정부가 제출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35항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안(대안), 의사일정 제36항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37항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상 21건의 법률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정부 제출 법률안에 대해서 국토해양부장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 존경하는 우윤근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정부가 제출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은 개발행위허가를 위한 관계행정기관 협의기간을 20일로 명시하고 신속한 협의를 위해 복합민원일괄협의회를 개최토록 하는 한편 토지거래 허가 시 투기 목적인 경우 외에는 원칙적으로 허가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우윤근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아무쪼록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의 입법 취지를 깊이 살피시어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우윤근 수고하셨습니다.

나머지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상 19건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이한규 한국토지주택공사법, 건축법, 지하수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상 4건의 일부개정법률안은 체계 및 자구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선박관리산업발전법안은 조세특례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표현을 통일하는 등 11개 사항을 수정하였습니다.

해외건설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인용을 명확하게 표기하는 등 3개 사항을 수정하였습니다.

임대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 호를 세분화

하는 등 6개 사항을 수정하였습니다.

항공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용어를 통일하는 등 4개의 사항을 수정하였습니다.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개정조문 반영 등 2개 사항을 수정하였습니다.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은 경미한 자구 1개를 수정하였습니다.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타법을 개정하는 부칙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건설기술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위임 조항 표현을 수정하는 등 4개의 사항을 수정하였습니다.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용어 통일 등 17개 사항을 수정하였습니다.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조세감면 규정을 삭제하고 표현을 수정하는 등 17개 사항을 수정하였습니다.

수난구호법 전부개정법률안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자치단체 순서를 정비하는 등 17개 사항을 수정하였습니다.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어순 어휘 1개 정리하였습니다.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표현을 명확히 하는 등 3개 사항을 수정하였습니다.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경미한 1개 사항의 표현을 수정하였습니다.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안은 약칭을 정비하는 등 10개 사항을 수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명확하게 표현하는 등 1개 사항을 수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20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우윤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체토론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학재 위원** 지금 상정된 향이 몇 향까지이지요?

○**위원장 우윤근** 37향까지……

김학재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김학재 위원** 37항 지방세기본법 안 중에서 131조의2 금품공여에 대한 과태료 부과……

장관님, 보시지요. 131조의2 금품공여에 대한 과태료 부과인데 이것은 세무공무원에게 금품을 공여하면 뇌물공여이고 이것은 형법으로 가거든요. 그런데 이 법에다가 별도로 과태료 규정을 둔다는 게 지금 적절치 않은 것 같네요.

○**행정안전부장관 맹형규** 그게 이중처벌의 소지가 있지 않느냐 하는 위원님 지적이신 것 같습니다. 다마는 이게 형벌을 받을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도록 단서조항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중처벌의 소지를 없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학재 위원** 물론 그런 부분도 있는데요. 지금 이게 세무공무원에게 뇌물 주면 과태료 부과한다면 세무공무원을 우대하는 조치가 되기 때문에 적절치 않습니다, 이것 형법 체계상. 처벌이 적절치 않거든요. 그래서 131조의2는 삭제하는 것이 좋겠고요.

그다음에 131조의3 보시지요. 131조의3에 2호 보시면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의 질문·검사권 규정에 따른 세무공무원의 질문에 대해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이 부분이 있거든요. 그다음에 “직무집행을 거부 또는 기피한 자” 이것은 상관 없는데 앞 부분에 전단 부분에 “거짓으로 진술한 부분” 이것은 일반적으로 국민에게 묵비권이 보장이 되어 있고 또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을 그런 권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진술거부하는, 거짓진술하는 그 자체를 가지고 처벌하는 규정들이 없습니다.

예를 들면 경찰이나 검찰에 가서 거짓진술했다 그래서 처벌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것하고 균형상 이 부분은 법 체계상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31조의2는 삭제하시는 게 맞고요. 또 131조의3에 2호 전단 부분도 삭제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 맹형규** 위원님, 그런데 이게 국세 또 조세범처벌법에 의해서 하는데 거기 내용이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지방세를 국세체계하고 좀 다르게 하는 것도 문제가 있지 않나 해서 국세하고 같이 만든 겁니다.

위원님 말씀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마는 법 체계상 국세하고 지방세를 다르게 하기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상임위원회에서도 그런 부분은 양해가 됐습니다.

○**김학재 위원** 아니, 국세에 대해서 거짓진술하

는 것에 과태료 부과하는 규정이 있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 맹형규** 있습니다. 조세범처벌법 16조5항에 보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고요. 거짓진술 얘기도 조세범처벌법 17조5항에 “세무공무원의 질문에 대하여 거짓으로 진술을 하거나 그 직무집행을 거부 또는 기피한 자” 이렇게……

○**김학재 위원** 만약 국세에 그 조항이 있다면 이 부분 131조3에 2호는 양해를 하겠고요. 131조의2는 삭제해야 됩니다.

○**행정안전부장관 맹형규** 그에 따른 그 과태료 부분 말씀이요?

○**김학재 위원** 과태료 부과 부분, 이것은 뇌물공여가 명백한데 세무공무원을 과태료 부과한다면 안 되지요.

○**행정안전부장관 맹형규** 그것도 조세범처벌법에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김학재 위원** 조세범처벌법에 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자체가 위헌적 소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법을 이렇게 만들지 않으면 여기서 지적을 안 하겠는데 법사위에서 법안에 대해서 처벌법규에 대해서는 전체 형벌체계하고 그것을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기존의 다른 법에 있다고 그래서 여기서 통과시켜 달라 하는 것은 다소 무리인 것 같고……

○**행정안전부장관 맹형규** 그동안에 지방세의 경우도 조세범처벌법에 준해서, 이것 준용을 죽 해왔다 말이지요. 그런데 갑자기 이것이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지방세기본법 개정안에 그것이 빠져 버리면. 그래서 그런 문제가 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저희들은 갖고 있습니다.

○**김학재 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그런 이유 가지고 법체계상 맞지 않는 법을 법사위에서 통과시켜 드리기는 좀 그렇거든요.

○**행정안전부장관 맹형규** 잠깐만 시간을 주십시오.

○**위원장 우윤근** 131조의2(금품 공여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그 부분 말씀이시지요?

○**김학재 위원** 예, 이것이 형법상 뇌물공여로 가는 것을 세무공무원에게……

○**위원장 우윤근** 과태료 부과한다는 거지요?

○**김학재 위원** 예, 과태료로 간다는 것은 법체계에 안 맞고.

○**위원장 우윤근** 장관님!

○**행정안전부장관 맹형규** 이것이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맞는데 지금 국세·지방세가 각각 따로 가는 것도 좀 이상해서 이것은 나중에 국회 법사위에서 국세하고 지방세를 다 한꺼번에 고치는 것이 옳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학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것은 오늘 법안이 상정이 되어서 지적을 해 드리는 것이고, 국세가 만약에 그렇게 됐다면 저희들이 법사위에서 개정안을 내서 고민하든지 그렇게 할 테니까 이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는 것이……

○**행정안전부장관 맹형규** 아니, 그런데 그동안에 조세범 처벌법에 준용을 해 오다가 갑자기 그것이 없어서 버리니까, 이것이 무슨 세무공무원을 봐주려고 그러는 것도 아니고요, 해 오다가 갑자기 없어지니까 이 법이 양쪽에, 지방세하고 국세가 맞지 않는다 이런 얘가지요. 그래서 이것은 일단은 통과를 해 주시고 다음에 법사위에서 좀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우윤근** 김학재 위원님 말씀이 법리적으로는 충분히, 처벌의 형평성 때문에 헌법 위헌 소지도 있고 법체계에 맞지 않아서 다른 때 같으면 법사위 2소위로 넘어가는 것이 당연한 것 같습니다마는 2소위가 언제 소집될지 모르기 때문에……

김학재 위원님, 어떻습니까? 조세범 처벌법에도 이와 같은 것이…… 전부 다 손을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보니까. 조세공무원에 대해서 과태료, 뇌물공여에 대해서 이것은 좀 특혜 같아요. 일반 공무원의 뇌물공여는 이렇게 다 형사처벌 하면서 과태료 부과, 법체계에 맞지는 않는데 개정안을 내시도록 하고 오늘은……

삭제에 동의를 지금 하기 어렵다는 취지지요, 지방세·국세의 차이?

○**행정안전부장관 맹형규** 예, 이것이 또 결국 납세자 입장에서 좀 애매하게 될 수도 있고 해서 일단은 해 주시고 이것을 나중에 좀 고쳤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김학재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이 위헌 소지가 있고 뭔가 좀 타당하지 않다는 것 분명히 알고 있는데요, 이것은 좀 그렇게 갔으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우윤근** 우리 김학재 위원님 어떻습니까?

○**김학재 위원** 이 법 자체가 지금……

○**위원장 우윤근** 문제는 있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이한규** 이것이 형사처벌 안 받

을 경우가 있습니다. 혹시 몰라서 사각지대……

○**김학재 위원** 아니, 그 문제가 아니고 원래 뇌물공여에 대한 형사처벌 권한은 검사하고 판사에게 있잖아요.

○**위원장 우윤근** 그렇지요.

○**김학재 위원** 그런데 이것을 자치단체장이 과태료 부과해 버리는 것은 월권이지, 전체 형사법 체계로 보자면. 지금 명백한 형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 자치단체장이 그냥 과태료로 부과를 해 버리면, 그러면 다른 공무원들은 어떻게 돼요, 다른 일반공무원들은? 그러니까……

○**위원장 우윤근**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보니까 관할 세무서장이 뇌물공여자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것 때문에 여기서도 지방자치단체장이 뇌물공여자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 형사처벌을 지금, 물론 과태료가 형사처벌은 아니지만 행정벌이지만 이것이 문제는 좀 있어 보이는데, 두 법이 다……

○**김학재 위원** 그러니까 조세범 처벌법에 대해서 그동안 이런 문제점이 제기가 안 되어서 그냥 놔둔 거고 우리가 법사위에서 심의를 안 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법안이 올라왔는데 문제점을 놔두고 그냥 통과시키는 것은 좀 그렇지요.

○**위원장 우윤근** 이것 삭제했다가, 조세범 처벌법도 개정안을 내야 되겠네, 이 처벌의 형평성 때문에.

○**김학재 위원** 그것은 우리가 내기로 하고.

○**위원장 우윤근** 그런데 단서가 있기는 있는데요, 형법으로 처벌되지 않는 경우에 과태료……

○**김학재 위원** 그래서 위원장님 말이지요, 이것을 이렇게 해 주시지요.

○**朴俊宣 委員**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의해서 과태료……

○**김학재 위원** 이것을 만약 오늘 여기서 통과시키기 위해서 삭제에 동의하시면 삭제하고 통과시키고 그렇지 않으면 2소위에서 좀더 논의를 하시지요. 이것이 명백한 지금 형법하고 충돌의 문제가 생기는데……

○**위원장 우윤근** 이것은 이렇게 하십시오, 장관님. 법체계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지적이 되고 있고, 또 2월 달에 대표님, 한번 국회가 열리겠지요? 그래서 이것은 한번 2소위에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아마 김학재 위원님도 양보하기가, 법체계에 관련해서 이것은 그냥 양해되기는 좀 어렵지 않나 싶어지는데 2소

위에서 한번 이 체계를……

○**朴俊宣 委員** 일단 2소위로 넘기지 말고 내일 우리 10시에 있으니까 하루만 더……

○**김학재 위원** 내일도 법사위 열려요?

○**朴俊宣 委員** 예.

○**위원장 우윤근** 오늘 너무 지체되면 안 되니까 전체회의에 계류시키고 그 문제를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 맹형규** 예, 그러시지요.

○**朴俊宣 委員** 저도 질의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우윤근** 박준선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朴俊宣 委員** 국토해양부장관님,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내용을 보니까 국민주택기금 용자금을 후순위채무로 한다, 이 내용이 되면 어떤 내용이 바뀌는 겁니까, 이것이?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 지금은 기금을 LH공사에다가 지원을 하면 그것이 가장 선순위채무가 됩니다. 그런데 LH공사의 전체 채무 중의 한 30%가 지금 기금채무거든요. 그것 때문에 부채비율이 높고 하니까 사채를 발행할 때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후순위채로 돌려 주면 사채 발행 여건이 좋아지면 LH 자금조달이 좀 원활해지고, 지금 사업이 굉장히 어려운데 그것을 통해서 사업이 좀 정상화될 수 있다 해서 정부에서 그렇게 좀 지원을 해 주기로 한 겁니다.

○**朴俊宣 委員** 아니, 그런데 LH공사가 지금 그것 때문에 정상화가 안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 그것 때문은 아닌데……

○**朴俊宣 委員** LH공사가 지금까지 부채 누적되고, 제가 지역에서도 그렇고 다른 데서도 보면 이런 식으로 봐주기를 하고 토지주택공사의 그 사람들 여러 가지 모럴해저드나 이런 것이…… 이런 식으로 지금 국가의 중요한 기금이면 나라의 세금인데 그것에 대해서 일종에 탕감해 주는 조치 아닙니까, 이것은?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 아니요, 탕감해 주는 것은 아니고 기금이 선순위채로 되어 있으니까……

○**朴俊宣 委員** 질의는 됐고요, 이것을 조금만 계류 좀 시켜 주십시오.

○**위원장 우윤근** 몇 항……

○**朴俊宣 委員** 17항입니다, 17항.

○**위원장 우윤근** 17항, 전체회의에……

○**朴俊宣 委員** 제가 이것 확인 좀 해 보고 해야 될 것 같으니까 내일 오전 10시에 법사가 있으니까 계류 좀 시켜 주십시오.

○**위원장 우윤근** 예, 그렇게 하십시오.

지금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지금 의결정족수가 좀 못 되는데 행안부장관에게 제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오늘 심의되는 안전하고 상관이 없습니다마는 전체회의에서 계류된 법안이 하나 있습니다, 법사위 통과됐는데. 거창사건 배상에 관한 특별조치법인데요, 제가 해박한 법률지식을 갖고 있지는 않지만 적어도 자유민주주의 국가이고 법치국가라면 또 법조인이라면 또 양심을 가진 자라면 1953년도에 고등군법회의에서 거창사건에 대해서 명령을 내린 사람에 대해서 책임을 확인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 정도는 알고 계실 겁니다, 행안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맹형규** 예.

○**위원장 우윤근** 우리가 근세사에서 억울한 사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입증관계 때문에, 세월이 많이 흘러서 증거가 없기 때문에 어떤 법적 조치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정치적인 입법은 가능한 경우가 더러 있었습니까.

그런데 제가 17대부터 법사위원회에 와서 ‘아, 이것은 법률가로서 도저히 용납될 수 없다. 국가가 명백하게 그것도 법원에서, 물론 군사고등법원이기는 합니다마는, 책임을 확인하고 확정된 희생자들에 대해서 국가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다 이것은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다, 세월이 많이 흘렀지만’, 그래서 17대 때 제가 그 법안을 냈는데 많은 동료 의원들이 다 동의했습니다.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이것은 정치적인 법안도 아니고…… 그랬는데 17대 행안위 통과하고 법사위원회에서 17대 임기 말에, 아마 국회가 임기 만료됨에 따라서 폐기되는 바람에 통과가 못되고 18대 들어와서 제가 이 법안을 또 냈습니다.

그런데 반대하는 명분은 뭐냐, 다른 지역들, 이를테면 거창 외에 산청 함양도 그때 억울한 죽음이 많고, 다른 여수 순천 이것도 같이 해 달라, 제가 같이 하려고 노력했는데 증거를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심증은 있지만 소위 말하는 물증이 없어서.

그래서 거창만 확실한 판결문이 있기 때문에

법리적으로 완벽하고, 다만 시효 때문에 못 했던 건데 그것은 당연히 국가가 배상책임이 있다, 누구에게 물어봐도.

그래서 어저께 그저께 우리 법사위원들이 충분히 심의해서 통과가 됐습니다. 오늘 전체회의에 넘겼는데 우리 여당 쪽의 얘기를 들으니까 정부 쪽에서 거부권 행사하겠다는, 저는 정말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 거부권 대상이 되는 것인지,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인지 문제점을 제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왜 정부가, 돈이 많이 든다, 돈을 지금 다른 데다가 얼마나 많이…… 이것은 법적으로 명백히 정부가 져야 할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데요. 장관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행정안전부장관 맹형규** 저도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거창사건이 한 번 배상을 하게 되면 그게 아마 무슨 독이 무너지듯이 옛날의 수없이 많은 그러한 사건들, 진화위에서 한 것 이외에도 다른 사건들이 전부 이러한 배상의 대상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를 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우윤근** 장관님도 정확한 사실을 지금 알지 못하고, 정말 이것은 유감스럽습니다.

제가 법을 안다는 게 참 어썩잖은데요. 우리 선배·동료 법조인도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고등법원에서 1951년 12월 16일 날, 거의 유일한 사례입니다, 판결을 내렸습니다, 정부가 잘못했다, 군인들이.

다른 것은 심증은 많습니까마는 법을 만들 수 없습니다, 정치적인 입법은 가능하지만 법리적으로는 거의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도 산청 함양, 또 여수 순천 분들 굉장히 많이 저한테 찾아왔는데요. 이 확정 판결문이 있습니다, 정부가 잘못했다고. 그것을 이유도 되지 않는 것으로 정부가 책임을 회피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아닙니다.

정부가 그런 태도를, 도저히 그것은 옛날에 우리가 먹고살기 어렵고 했을 때 정부 예산 관계도 있고 우선순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60년을 기다려온 입법인데요. 장관님께서 돌아가셔서 한번 이것 보십시오.

그리고 그것은 도저히 법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없는 답변입니다. 이것을 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또 억울한 죽음을 국가가 배상하라고 요구할 것이다…… 법과 원칙에 따라서 하십시오.

오.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억울한 죽음이고, 국가의 책임이 있다, 고의과실책임이 있다 입증하면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누가 막습니까, 국민의 기본권인데.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8년을 기다려 가지고, 우리 여당의 법사위원님한테 물어보십시오. 법리적으로 완벽한 내용입니다. 제가 서울대 법학연구소하고도 17대 국회 들어와서 ‘아, 정의가 바로 서려면 이것은 해야 되겠구나’, 그런데 예산이 많이 든다, 그것은 이유가, 300조가 넘는 예산을 갖고 있는 대한민국입니다.

이 정의를 바로세우는 일이고요. 판결문이 있기 때문에…… 적어도 법을 안다면 이것은 다 동의합니다.

그런데 붓물이 터질 것이다, 이것은 정치적인 답변입니다.

○**행정안전부장관 맹형규** 제가 여기서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하기가 별로 내용도 잘 모르고……

○**위원장 우윤근** 내용을 파악해 보시라고 제가……

○**행정안전부장관 맹형규** 알겠습니다.

○**위원장 우윤근** 오늘 회의하는 석상입니다마는 시간이 좀 있어서, 이것은 대한민국이 정의롭지 못한 것입니다. 제가 무리하게 일을 추진하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이 법만큼은 대한민국이 바로 서기 위해서, 이렇게 힘없고 나약한 사람을 이렇게 국가가 법원에서 책임자를 처벌했는데 배상을 못 한다면 이것은 나라가 아닙니다.

다른 사건들 때문에, 다른 사건은 입증하기가 어려워요. 저도 그 법을 만들어 보려고 했습니다. 제가 얘기했어요, 입증이 어렵다. 그냥 충분히 그 시절에 억울한 죽음이 많지만 그것을 어떻게 입증하느냐, 이것은 판결문으로 이렇게 기록에 남아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그래서 많은 법조인들이 여기에 대해서 이론이 없습니다, 거의. 다른 사건들은 정치적인 입법은 가능할 겁니다. 여야가 의제하자, 대충 개연성이 있다, 그것만 가지고는 특별법을 만들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저도.

산청 함양 왜 안 해 주느냐고 저한테도 물려왔습니다, 또 여수 순천…… 그런데 내가 이것은 만들 근거가 부족하다고 얘기했습니다, 국가가 대타협을 해서 하기 전에는. 그런데 유일하게 거창사건은 판결문이 있어서 이것은 안 해 줄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행정안전부장관 맹형규** 그런데 그것은 관계부처하고 아마 얘기가 있을 겁니다.

○**위원장 우윤근** 이것은 원칙의 문제입니다. 법과 원칙의 문제지 정치적으로 관계부처가 대통령이 명령해서—지시해서—장관이? 그럴 문제가 아닙니다. 또 국회가 다 동의하고 있는 것을, 제가 오늘 참 한심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행정안전부장관 맹형규** 아니, 위원장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게 행안부장관한테 말씀하실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위원장 우윤근** 행안부 쪽에서도 입장을, 기재부하고 행안부·청와대 쪽에서 아마 이 의견……

○**행정안전부장관 맹형규**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법무부 소관으로 알고 있는데요.

○**위원장 우윤근** 법무부에서는 동의를 해서 어저께 법사위 통과가 됐습니다. 그런데 행안부 쪽하고……

우리 대표님, 죄송합니다마는 시간이 좀 남아서 제가, 우리 대표님께서 정부에서 거부권 행사가 우려된다 해서 오늘 법안 상정을 못 했는데 그 정부 중에는 제가 정확하지 않지만 행안부·기재부·청와대 이런 쪽이 아닌가? 우리 대표님, 맞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 맹형규** 제가 우연히 이 자리에 앉았다가 지금 말하자면 벼락 비슷한 것을 좀 맞고 있는데 하여튼 저는 구체적인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우윤근** 그렇다면 제가 죄송합니다마는 행안부 쪽에서도 의견을, 아마 장관한테 보고가 안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행정안전부장관 맹형규** 제가 한번 좀 보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위원장 우윤근** 예, 장관한테 직접 보고……

한번 말씀……

○**황우여 위원** 위원장님께서서는 그러면 오늘 행안부장관은 별 이의가 없는 것으로 정리하시고……

지금 별 관계는 없으시다는 말씀 아니신가요?

○**행정안전부장관 맹형규** 예.

○**황우여 위원** 그러니까 다른 데 어려움이 있는 가는 양당 대표 간에 다시 검토해서 지금 우리 존경하는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을 감안해서 좋은 방향으로 가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우윤근** 제가 확인했더니 장관님, 장관님은 보고를 안 받으셨는데요. 행안부 산하에 과

거사처리지원단 거창사건처리과 여기서 아마 어렵다, 그래서 아마 장관님은 책임자일 뿐이라서 보고가 안 된 것 같습니다. 그 산하에 있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과거사처리지원단.

○행정안전부장관 맹형규 예, 과거사처리지원단이라는 게 있습니다.

○위원장 우윤근 장관님한테 질의한 것은 제가 아주 틀린 것은 아닌데요. 장관님께서 파악을 아직, 어저께 된 법이라서 보고가 안 되고, 아마 실무자들이 그렇게 얘기한 건데……

한 분만 더 오면 의결……

○朴俊宣 委員 예, 이정현 위원님만 오면, 이정현 위원님 연락해서, 이용희 위원님은 밖에 계시고요.

○위원장 우윤근 시간이 남으니까 자꾸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장관님. 위원장이 얘기 안 할 수도 없잖아요. 가만히 앉아 있기도 그런데 마침 잘됐습니다.

여기 박준선 간사께서도 이 점을, 법률가 아십니까? 충분히 거창사건은 법리적으로 검토를 다 끝낸 것이었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 맹형규 시간이 혹시 남으시면 제가 다른 것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우윤근 예, 말씀하시지요. 시간이 남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 맹형규 아까 지방세기본법에 대해서 존경하는 김학재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요. 제131조의2 여기에서 세무공무원들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하는 부분 아까 빠지고 말씀하셨잖아요. 거기에 동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대신 조세범 처벌법을 갖다가 똑같이 같이 빼도록, 그래서 형평이 좀 맞춰져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해 주시는 조건으로, 여기서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좀 빼주셨으면 좋겠고요.

만약에 조세범 처벌법이 안 될 경우에는 나중에라도 다시 그대로 좀 형평을 맞출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학재 위원 알겠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 맹형규 그런 조건으로 동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우윤근 조세범 처벌법도 빠지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마는……

○행정안전부장관 맹형규 제가 봐도 그렇습니다.

○김학재 위원 그것은 우리가 개정안을 내겠습니다.

○위원장 우윤근 개정안을 내서, 예.

그게 아마 형평성 때문에, 그것은 장관님 말씀이 옳은 것 같아요.

○행정안전부장관 맹형규 그렇게 해 주시면 제가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우윤근 그러면 박준선 위원도 동의하겠습니까?

○朴俊宣 委員 예.

○위원장 우윤근 그러면 이것 의결을…… 삭제하고요.

○김학재 위원 예, 제131조의2만 삭제하고요.

○위원장 우윤근 조세범 처벌법은 김 위원님께서 개정안을 내서 삭제……

○김학재 위원 나중에 별도로 내겠습니다.

○위원장 우윤근 그러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또 우리 국무위원들 바쁘시니까 의결을 이따가, 이석한 다음에…… 우리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진행을 하고, 의결은 보류를 하고, 국무위원들은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 맹형규 저는 좀더 남아 있어도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우윤근 아, 그렇습니까?

38.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안(대안)

(행정안전위원장 제출)

39.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

안전위원장 제출)

40.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행정안전위원장 제출)

4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

42.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

43.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

안전위원장 제출)

44.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

45.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정수성 의원 대표발의)(정수성 · 이종혁 · 이인기 · 한기호 · 박대해 · 김을동 · 정갑윤 · 최병국 · 임동규 · 김소남 · 김태원 · 김정권 · 안경률 · 유정현 · 진영 · 윤상일 · 이명수 · 신지호 · 안효대 · 김충조 · 문학진 · 장세환 의원 발의)

- 46. **교육국제화특구의 지정·운영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서상기 의원 대표발의)(서상기·홍사덕·김대환·이해봉·유승민·박종근·배영식·정희수·주성영·이명규·조전혁·최경환·이인기·김성조·박보환·주호영·조원진·원희목·이한구·권영진·김세연·김정권·손숙미·정해걸·한선교·배은희·안상수·이화수·이정현·이철우·이성현 의원 발의)
- 47.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과학기술위원장 제출)
- 48.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과학기술위원장 제출)
- 49.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과학기술위원장 제출)
- 50.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과학기술위원장 제출)
- 51.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과학기술위원장 제출)
- 52. **학교체육진흥법안(대안)**(교육과학기술위원장 제출)
- 53.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대안)**(교육과학기술위원장 제출)
- 54.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과학기술위원장 제출)
- 55. **유네스코 활동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17시21분)

○**위원장 우윤근** 이어서 의사일정 제38항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39항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40항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41항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42항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43항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44항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45항 정수성 의원이 대표발의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46항 서상기 의원이 대표발의한 교육국제화특구의 지정·운영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 의사일정 제47항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48항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49항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50항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51항 학교

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52항 학교체육진흥법안(대안), 의사일정 제53항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54항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55항 정부가 제출한 유네스코 활동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18건의 법률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정부 제출 법률안에 대해서 교육과학기술부 제1차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과학기술부제1차관 설동근** 존경하는 우윤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정부가 제출한 유네스코 활동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동 개정법률안은 2000년 8월 29일에 체결되고, 2011년 8월 23일에 갱신된 대한민국 정부와 유네스코 간 설립 협정에 따라 설립 운영 중인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의 국내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동 개정법률안의 제안취지를 감안하시어 통과될 수 있도록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우윤근** 나머지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상 17건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상용** 전문위원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8항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안, 제39항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40항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일부 조문 체계를 변경하고 경미한 자구 수정을 하는 외에 별다른 문제가 없었습니다.

의사일정 제41항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위원장의 직무에 관하여 법 제9조제3항으로 이동하고, 위원장 및 간사위원의 직무대행에 관한 규정을 하나의 조문으로 모아서 규정하는 수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구 정리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2항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43항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경미한 자구 수정을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4항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안 제12조제7항에서 반환공여구역의 지상물 또는 지하매설물을 공공용으로 계속 활용하려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양여하도록 하는 조항인데 양여 주체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아 양여 주체를 국방부장관으로 명확하게 하는 수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5항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경미한 자구 수정을 하는 외에 별다른 체계상의 문제가 없었습니다.

의사일정 제46항 교육국제화특구의 지정·운영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은 안 제19조제1항·제3항·제4항에서 국유재산의 사용허가 및 대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1년 4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제4조에 의하면 국유재산특례는 국유재산법 및 위 특례제한법의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정할 수 없도록 하면서 별표는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외의 다른 법률로 개정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안 제19조제1항·제3항·제4항과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제4조의 상충 여부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 밖의 자구 수정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7항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48항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제49항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50항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일부 조문 체계와 표현을 정비하고 경미한 자구 수정을 하는 외에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51항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의 체계와 자구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52항 학교체육진흥법안은 2010년 12월에 제정된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에도 교육감을 두도록 되어 있어서 안 제4조제2항에 특별자치시 교육감을 추가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6조제1항 각 호에서 나열하고 있는 사항은 학교의 장의 권한에 속하는 것으로 수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구 수정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3항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은 안 제21조제3항에서 국가는 국유재산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에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 또는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1년 4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제4조에 의하면 국유재산특례는 국유재산법 및 위 특례제한법의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정할 수 없도록 하면서 별표는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외의 다른 법률로 개정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안 제21조제3항과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제4조의 상충 여부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 밖의 자구 수정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4항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55항 유네스코 활동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경미한 자구 수정을 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18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우윤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대체토론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학재 위원님!

○김학재 위원 장관님,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말이지요, 제6조제5호에 보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경우” 그렇게 돼 있지요?

○행정안전부장관 맹형규 예.

○김학재 위원 그런데 일반적으로 형사처벌법규 만들 적에 ‘이 법 몇 조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경우’ 이렇게 특정을 해서 하지 포괄적으로 이 법에 위반한 경우를 처벌하는 그런 규정은 없거든요?

○행정안전부장관 맹형규 글썄, 그것은 제가 법률전문가가 아니라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김학재 위원 (웃음)

이게 해당 상임위에서 처벌규정 만드는 데 전문이 아니어서 아마 이렇게 포괄적으로 정한 것 같은데 “이 법” 앞의 “이 법”은 빼도 될 것 같습니다,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

○행정안전부장관 맹형규 이게 법체계상 좀 문

제가 있는 건가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김학재 위원** 예, 규정을 너무 포괄적으로 하면……

○**행정안전부장관 맹형규** 예,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고치면 되겠습니까?

○**김학재 위원** “이 법”만 빼 버리면 됩니다, 그냥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경우”.

○**행정안전부장관 맹형규** 예, “이 법 또는”을 빼면 되는 거지요?

○**김학재 위원** 예, 앞의 “이 법”이 그게 의미가 없는 게 들어가 있어요.

○**행정안전부장관 맹형규** 그렇습니다.

○**위원장 우윤근** 그것은 체계상 문제니까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행정안전부장관 맹형규** 예.

○**김학재 위원** 그것은 앞의 것은 삭제하는 게 좋겠고요.

그다음에 안건 54항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부차관 나오셨어요?

○**교육과학기술부제1차관 설동근** 예.

○**김학재 위원** 입학사정관 했던 사람은 일정 기간 취업 못 하도록 한 규정 아닙니까?

○**교육과학기술부제1차관 설동근** 예, 일정 기간 취업 못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김학재 위원** 그 취지는 좋은데 그것을 어겼을 때 제재조항 같은 게 필요할 것 같은데 그것은 생각을 안 하셨나요?

○**교육과학기술부제1차관 설동근** 제재조항은 저희들이 생각을 안 했습니다.

○**김학재 위원** 공직자윤리법 보면 어긴 경우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거든요.

○**교육과학기술부제1차관 설동근** 행정제재는 할 수 있도록 해 놓았습니다.

○**김학재 위원** 행정제재라는 게 뭐지요?

○**교육과학기술부제1차관 설동근** 학원법 이 관련 법규를 어겼을 때는 제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김학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 고등교육법에서 이것을 위반한 경우에 여기에 어떤 제재규정이 들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

○**교육과학기술부제1차관 설동근** 대통령령에 담아서 할 수 있도록 60조에 위임을 해 놓았기 때문에 대통령령으로서 구체적인 내용을 담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재 위원** 제재를 대통령령으로 잡니까? 모법에 넣어야 될 것 같은데요?

○**교육과학기술부제1차관 설동근** 모법에 정원 감축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김학재 위원** 이게 지금 급한 법입니까?

○**교육과학기술부제1차관 설동근** 예, 그렇습니다.

○**김학재 위원** 그러면 내일이 있으니까 내일 모법에다 제재규정 하나 넣어 가지고 만들어서 가져오시지요. 대통령령으로 넣을 수 있는 것을……

○**교육과학기술부제1차관 설동근** 고등교육법 60조에 이미 근거가 마련돼 있습니다.

○**김학재 위원** 어떻게 돼 있지요?

○**교육과학기술부제1차관 설동근** 세부적인 것은 대통령령에 둔다고 고등교육법 60조에 이미 이 내용이, 근거가 마련돼 있습니다.

○**김학재 위원** 제재에 대해서요?

○**교육과학기술부제1차관 설동근** 예.

○**김학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윤근** 다른 질의가 없으면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부장관 박재완** 위원장님, 죄송합니다만 제가 오늘 교과위 소관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대안)에 관해서 의견을 제시하기 위해서 출석을 요청했었습니다.

○**위원장 우윤근** 예, 말씀하십시오.

○**기획재정부장관 박재완** 기획재정부 입장 말씀 올리겠습니다.

인천지역은 인구 수와 학생 수가 굉장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국립종합대학교가 없습니다. 또 지역주민과 지역 국회의원들께서 국립종합대학 설치 또 기존의 시립 인천대학을 국립대학으로 전환하자는 요구가 큰 점, 또 2006년 4월 교과부와 인천시 그리고 인천시립대학교 사이에 국립대학법인으로 전환하는 MOU를 체결해서 꾸준히 이런 노력을 기울여 왔던 점 등을 감안해서 이 법안이 원만하게 처리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교과위에서 의결된 이 법안은 저희가 일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해서 좀 제기를 하고자 하는데요.

첫째, 시립대학인 인천대학에는 소유하거나 관리 중인 국유재산이 없습니다. 그런데 21조를 보시면 국유재산을 소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것으

로 오인할 소지가 있는 불필요한 조항들이 열거가 돼 있기 때문에 이 국유재산 관련 부분은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그런 의견을 교과부와 함께 저희들이 제기를 하고 있고, 법사위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이게 제기된 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점을 바로잡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2006년 4월 인천시와 교육과학기술부 사이에 MOU를 체결할 때 합의한 점이 있습니다.

시립대학을 국립대학으로 일시에 전환할 때 생기는 전환기의 문제점을 완화하기 위해서 인천시는 인천대학을 법인으로 전환한 이후 5년간 매년 300억 원씩 지원하고 6년차 이후 10년간은 매년 200억 원씩 출연해서 인천대학교발전기금으로 총 2000억 원 규모를 조성하도록 하고, 교육과학기술부는 법인으로 전환된 이후 6년차부터 대학 운영비를 지원하기로 합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지금 여기 법안에 충분히 담겨져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봤을 때, 첫째, 부칙으로 이런 내용들을 반영하는 방안, 둘째, 입법 기술상 부칙으로 이런 것까지 담기가 좀 어렵다면 심사를 하시면서 부대의견으로 그 점을 명확하게 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의견을 드리고요.

세 번째 사안입니다.

마침 우리 정갑윤 예결위원장님 참석하고 계십니다마는 울산 국립대 설립·운영법 제16조제1항을 보면 “국가는 울산과학기술대학교의 설립·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에 충당하게 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반해서 오늘 부의되어 있는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 제20조제1항을 보면 ‘경비에 충당하게 하기 위하여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에 출연금을 총액으로 지급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두 규정의 차이를 보면 ‘예산의 범위 안에서’라는 문구가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다른 법률과의 형평성 등을 존중하시는 법사위의 입장에서 이런 점 등을 감안하셔서 기획재정부는 원만하게 처리되기를 기대합니다마는 조문을 일부 수정을 하시면 어떨까 하는 의견을 말씀 올립니다.

○황우여 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우윤근 예, 황우여 위원님 말씀하시지

요.

○황우여 위원 지금 기재부장관이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국립대를 신설하는 부분이 아니고 기존의 시립대학의 재산을 국가가 인수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국립대로 전환하는 것이기 때문에 21조 중에 ‘국가’ 또는 ‘국유재산’ ‘국유재산법’ ‘물품관리법’ ‘기획재정부장관’과 같은 부분은 필요 없는 조항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본 위원도 같은 생각입니다.

두 번째로 기존에 인천광역시와 교과부 간에 체결하였던 MOU에 따른 조항은 지금 현 시장으로서도 그대로 유지하고 이 부분에 대한 약속은 지키기로 확인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것으로 인천시와 확인이 되었습니다.

다만 기재부장관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5년간 매년 300억 씩 1500억 원의 운영비를 지원한다는 점은 약속을 한다 하더라도 국립대학이 됐는데 5년 동안은 국가가 한 푼도 지원하지 않는다, 6년차부터 운영비를 지원한다라는 것은 MOU 내용에 없고……

○기획재정부장관 박재완 포함돼 있습니다.

○황우여 위원 몇 부분에 돼 있지요? MOU 부분의 어느 조항인지? 가, 나, 다, 라로 되어 있는데……

○기획재정부장관 박재완 ……

○황우여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산 범위 내에서 국가가 학교 운영에 대해서 최종적인 책임은 지는 것으로 해 주시는 게 어떻겠나……

○기획재정부장관 박재완 MOU 제4호입니다. 여기에서 ‘갑’이라 함은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진표 장관님을 의미하는 것인데요, “갑은 인천대학교가 국립대학 특수법인으로 전환된 후 6년차(2014년 예정)부터는 대학 운영비를 지원한다”고 돼 있습니다.

○황우여 위원 잠깐만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것 하고 다른 문서로 보이는데……

○기획재정부장관 박재완 4호입니다.

○황우여 위원 예, 그러면 이 부분은 받아들이겠습니다, 돼 있으면.

그리고 ‘예산 범위 내’라는 부분은 서울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을 비롯한 타 국립대학의 조문에는 없는데, 그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이야기인데 꼭 그런 규정을 넣어야 되는지는 모르

겠습니다.

다른 대학에 관한 법률에는 예를 들면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에 안정적 재정지원을 하여야 한다’ 이런 식으로 규정이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위원장님께서 적의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우윤근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지금 문제점을 여러 가지 제기해 주셨는데 우선 21조에 나와 있는 국유재산이 현실적으로 없기 때문에 삭제하는 부분은 법사위원회의 법 체계·자구 범위에 포함될 것으로 생각이 들어집니다.

21조1항 또 3항에 대해서 우리 기재부장관께서 문제를 제기해서 국유재산법, 그 준거 법규를 아예 빼 버리는 문제는 이것은 상당히 우리 법사위원회의 체계·자구를 넘어서는 입법정책에 관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지고요.

또 하나, 지금 21조 관련해서 2006년에 맺었다는 MOU를 부대의견으로 달 것인지, 부칙으로 달 것인지도 이 법안을 상당히 제한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게 입법정책에 관한 것으로 보여져서 통상 소관 상임위원회와 의논을 저희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과위원장한테 최소한, 이게 너무 많은 손질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한번 오늘 하루 논의를 해 가지고 정리하는 데도 좀 시간이 걸리고 해서 내일 10시에 이 부분을 한번…… 오늘 여기에서 해 버려요?

상임위원회의 그것을 좀 우리가, 너무 많은 데를 손을 대서 소관 상임위원회 의견을 한번, 여태 우리가 구했거든요.

○황우여 위원 교과부장관이……

○위원장 우윤근 아니, 상임위원회에서 넘어온 법안이기에 때문에 그것을 한 번은 구해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 법사위원회가 손을 댈 수 있는 범위가 2소위로 넘어가면 시간적 여유가 좀 있는데 2소위로 넘어가지 않고 전체회의에서 손을 대는 경우는 특별한 경우인데 체계·자구, 아주 형식적인, 입법 체계에 관한 것은 전체회의에서 간단히 양해하에서 하는데 지금 상당히 많은 부분이 손질되기 때문에 소관 상임위원회 의견을 구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루 정도니까 내일 오전 10시에 우리 소관 상임위원회하고 교과부하고 좀더 정밀하게, 이것 그냥 여기서 함부로 고치기에는 애러가 나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면, 여기서 금방 손질하는 것은 굉장히 신중하지 못한 것 같아서요.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7.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장광근 의원 대표발의)(장광근·조원진·윤영·신영수·박상은·이병석·이해봉·강성천·송훈석·손범규 의원 발의)(계속)

18. 선박관리산업발전법안(현기환 의원 대표발의)(현기환·권영진·김정권·서병수·이진복·김용구·황영철·김세연·유재중·이한성·장제원·김호연 의원 발의)(계속)

19. 해외건설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장윤석 의원 대표발의)(장윤석·이정선·이종혁·박대해·이한성·박민식·홍사덕·김옥이·송광호·최구식 의원 발의)(계속)

20. 임대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안홍준 의원 대표발의)(안홍준·송민순·원희목·유재중·윤석용·현기환·손숙미·백성운·이찬열·이한성 의원 발의)(계속)

21. 항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해양위원장 제출)(계속)

22.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해양위원장 제출)(계속)

23.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해양위원장 제출)(계속)

24. 해상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해양위원장 제출)(계속)

25.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해양위원장 제출)(계속)

26. 건설기술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해양위원장 제출)(계속)

27.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해양위원장 제출)(계속)

28.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국토해양위원장 제출)(계속)

29. 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해양위원장 제출)(계속)

30. 수난구호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해양위원장 제출)(계속)

31.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해양위원장 제출)(계속)

32.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최규성 의원 대표발의)(최규성·박기춘·백재현·유선호·강창일·강기갑·노영민·이찬열·오제세·김재윤 의원 발의)(계속)
33.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대안)(국토해양위원장 제출)(계속)
3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정부 제출)(계속)
35.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안(대안)(국토해양 위원장 제출)(계속)
36.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해양 위원장 제출)(계속)
37.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 안전위원장 제출)(계속)

(17시43분)

○위원장 우윤근 의사일정 제17항, 제25항, 제29항과 제34항의 법률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항은 박준선 위원께서 양해를 했습니다. 전체회의 보류를 양해했기 때문에 바로 의결했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부터 제24항까지, 제26항, 제27항, 제28항, 제30항부터 제33항까지, 제35항부터 제37항까지의 법률안에 대하여는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받아들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그리고 제37항의 법률안 중 제131조의2는 전체회의에서 김학재 위원이 수정의견을 제시한 바와 같이 삭제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8.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계속)
39.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계속)
40.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계속)
4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계속)
42.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계속)

43.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계속)
44.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계속)
45.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정수성 의원 대표발의)(정수성·이종혁·이인기·한기호·박대해·김을동·정갑윤·최병국·임동규·김소남·김태원·김정권·안경률·유정현·진영·윤상일·이명수·신지호·안효대·김충조·문학진·장세환 의원 발의)(계속)
46. 교육국제화특구의 지정·운영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서상기 의원 대표발의)(서상기·홍사덕·김태환·이해봉·유승민·박종근·배영식·정희수·주성영·이명규·조진혁·최경환·이인기·김성조·박보환·주호영·조원진·원희목·이한구·권영진·김세연·김정권·손숙미·정해걸·한선교·배은희·안상수·이화수·이정현·이철우·이성현 의원 발의)(계속)
47.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과학기술위원장 제출)(계속)
48.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과학기술위원장 제출)(계속)
49.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과학기술위원장 제출)(계속)
50.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과학기술위원장 제출)(계속)
51.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대안)(교육과학기술위원장 제출)(계속)
52. 학교체육진흥법안(대안)(교육과학기술위원장 제출)(계속)
53.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대안)(교육과학기술위원장 제출)(계속)
54.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과학기술위원장 제출)(계속)
55. 유네스코 활동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위원장 우윤근 이어서 의사일정 제38항부터 제50항까지, 제52항, 제54항부터 제55항까지의 법률안에 대하여는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받아들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53항에 대해서는 전체회의에서 계속 심사하고 내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1항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3.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

64.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

65.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66.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계속)

67.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정부 제출)(계속)

(17시45분)

○위원장 **우윤근** 의사일정 제63항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64항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65항 정부가 제출한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66항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 의사일정 제67항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5건의 법률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정부 제출 법률안에 대해서 먼저 고용노동부장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고용노동부장관입니다.

존경하는 우윤근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직업능력개발 계좌제의 발급 대상을 현재 실업자로 한정하고 있으나 기간제, 시간제, 파견 등 취업 중인 근로자에게까지 확대해서 근로자의 취업 여부에 관계없이 원하는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또한 직업훈련시설이 훈련지원금을 부정하게 지급받은 경우에 반드시 지정을 취소하도록 하는 것이 과중하다라는 지적에 따라서 사안의 경중에 따라 지정취소 외에 훈련정지 처분도 할

수 있도록 제재 기준을 합리화하였습니다.

그리고 기능대학에 전공 심화과정을 개설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서 산업현장의 해당 분야 종사자들이 직업훈련 교육의 기회를 계속 가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일시적인 경영상의 어려움 등으로 퇴직한 근로자에게 임금 또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한 사업주에게 용자를 통해서 체불을 신속하게 청산하도록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아울러 위의 용자 지원에 따른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사업주가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용자금은 반환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검토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우윤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부장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장관 유영숙** 존경하는 우윤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의사일정 제65항 정부가 제출한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첫째 유역 단위의 통합적 하수도 관리를 위한 유역하수도정비계획 수립 근거를 마련하고, 둘째 하수 범람으로 공공수역 수질 악화의 우려가 있는 지역을 하수도 정비 중점 관리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셋째 공공 하수도 관리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관리 대행업 등록제를 도입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7항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어제 제안설명을 드렸기에 오늘은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법률안의 개정 취지를 감안하시어 통과될 수 있도록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우윤근** 수고하셨습니다.

나머지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상 2건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상용**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6항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벌칙규정인 개정안 제28조제2항의 구성요건이 불명확하여 이를 명확하게 수정하고 비례원칙에 맞도록 법정형을 수정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7항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검토한 결과 다른 법률의 개정 방식으로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는 부칙조항을 삭제하고 경미한 자구를 수정한 외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58항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59항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제62항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원안의 체계와 자구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0항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61항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제63항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제64항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제65항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일부 조문 체계를 변경하고 표현을 수정하고 경미한 자구를 수정한 외에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어제 검토보고를 드렸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에 지적이 됐던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미리 배포해 드린 근로기준법 명단 공개 수정안 신·구 조문대비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의 안에서 과잉금지 원칙 위반 소지가 있었던 부분을 명확하게 하여 43조의2제1호와 2호를 통합하여 불필요한 부분을 삭제하고 요건을 명단 공개일 이전 3년 이내 임금 등을 체불하여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된 자로서 명단 공개일 이전 1년 이내 임금 등의 체불총액이 30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인적사항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금액 기준을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상향하였고 상습적인 임금 체불자를 판단하기 위해서 '3년 이내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된 자'라는 기준을 추가하였으며 구속 기소되거나 도피 또는 소재 불명으로 기소 중지된 사실이 있는 자에 대해서는 그 요건을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명단 공개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하기 위해서 제3항에 명단 공개 여부를 심의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정보심의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10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우윤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체토론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아직 의결정족수가 되지 않아서…… 상정이 일부 누락된 법안을 다시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56.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영 의원 대표발의)(이주영·강석호·강성천·김성식·김성태·김재경·손범규·유기준·유일호·이명규·이범관·이범래·이성현·이화수·정갑윤·정진섭·정태근·최구식·허원제·황영철 의원 발의)

57.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조해진 의원 대표발의)(조해진·이춘식·윤진식·김형오·주광덕·유정현·임해규·강성천·이은재·김호연 의원 발의)

58.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59.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60.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구 의원 대표발의)(김용구·이명수·오제세·임영호·김낙성·김창수·변웅전·이영애·주승용·신낙균·조배숙·김성곤·강성천·안규백·신영수·이재선·권선택·유정현·류근찬·김재균·이낙연·박선영·정진섭·홍희덕·손범규·정병국·홍영표·이미경 의원 발의)

61.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

62.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

(17시54분)

○위원장 우윤근 의사일정 제56항 이주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57항 조해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58항 정부가 제출한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59항 정부가 제출한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60항 김용구 의원이 대표발의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61항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62항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착오가 있어서…… 방금 말씀드린 7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이상 5건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7건 상정된 데 대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친 것으로 원용하겠습니다.

의결이 안 되기 때문에 의결을 잠시 미루고……

○**朴俊宣 委員** 일단 즉 진행하고 의결은 나중에 하시지요.

○**위원장 우윤근** 그렇시다. 진행하지요, 상정을 해서.

국무위원이 안 계신 자리에서 의결을 하도록 여러분이 양해해 주시면 국무위원들은 보내드리고 계속 의사일정은 진행하고 의결은 따로 정족수가 되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은 돌아가시도록 하시고요.

68. 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장병완 의원 대표발의)(장병완·이종걸·양승조·유선호·전병헌·최종원·김재균·강기정·이춘석·조정식·안규백 의원 발의)

69.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애주 의원 대표발의)(이애주·윤석용·유승민·이윤성·임혜규·유재중·정옥임·김혜성·이정선·김성동 의원 발의)

70.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춘진 의원 대표발의)(김춘진·김영진·오제세·유성엽·김성곤·안민석·김영록·이용경·최재성·강창일 의원 발의)

71. 청소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여성가족위원장 제출)

72. 청소년복지지원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여성가족위원장 제출)

73.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여성가족위원장 제출)

74.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75. 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76.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여성가족위원장 제출)(계속)

(17시59분)

○**위원장 우윤근** 의사일정 제68항 장병완 의원이 대표발의한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69항 이애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가정

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70항 김춘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71항 청소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72항 청소년복지지원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73항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74항 정부가 제출한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75항 정부가 제출한 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76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상 9건의 법률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정부 제출 법률안에 관해서 여성가족부장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부장관 김금래** 존경하는 우윤근 법제사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및 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법률안 2건은 지방분권촉진위원회 결정에 따라 권한을 지방에 이양하려는 것으로서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지역 단위의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활성화를 위해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의 주체를 시장·군수·구청장까지 확대하며, 가족친화 직장환경 조성, 산업단지의 가족친화 환경 조성, 가족친화 마을환경 조성 및 가족친화지원센터의 사업 주체도 시장·군수·구청장까지 확대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정의례에 관한 지도·계몽을 위한 명예가정의례지도원 위촉 권한을 여성가족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장에서 지방자치단체장만 갖는 것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법률안을 정부가 제안한 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우윤근** 수고하셨습니다.

나머지 제안설명서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상 6건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철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이 개정안은 법률상 근거 없이 운영되던 유해매체물 심의분과위원회의 법적 근거 등을 마련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개정안은 가정폭력범죄 현장에 출동한 사법경찰관리가 현장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으로 경미한 자구 수정 외에 별다른 문제가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개정안은 일정한 식품접객업 등의 사업장에 성매매피해상담소의 연락처 등에 관한 사항을 게시하도록 하려는 내용으로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가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청소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이 개정안은 청소년지도사 및 청소년상담사의 보수교육을 의무화하는 등의 법안으로서 경미한 자구 수정 외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청소년복지지원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입니다.

이 개정안은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의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검토 결과 경미한 자구 정리 외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이 개정안은 성폭력피해자를 고용하고 있는 자가 성폭력피해자를 해고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경우에 형벌을 부과하는 등의 내용으로 경미한 자구 수정 외에 별다른 문제가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이 개정안은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주체에 시장·군수·구청장을 추가하는 등의 내용으로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가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

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이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만이 명예가정의례지도원을 위촉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역시 별다른 문제가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상 8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우윤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체토론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이두아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이두아 위원 장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68항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일부에서는 이 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32조의2인가요, 유해매체물 심의분과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해매체물 심의분과위원회의 임무나 내용이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업무하고 중복되는 게 아닌가라는 견해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입장을 좀 알려주시지요.

어떻습니까? 중복이 될 우려가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여성가족부장관 김금래 중복 우려는 없습니다. 저희가 음반 심의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이두아 위원 여기는 음반 심의를 주로 하기 때문에, 여기는 영상매체고 하기 때문에 중복되는 부분이 없습니까?

○여성가족부장관 김금래 예.

○이두아 위원 그러면 음반 심의를 주로 한다는 부분은 명확히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이 부분은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업무와는 중복되지 않는 게 명확하다 이 말씀이지요?

○여성가족부장관 김금래 예, 명확합니다.

○이두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우윤근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전문위원께서, 의사일정 제76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저께 이두아 위원도 지적을 하고 이춘석 위원도 지적을 하셨는데, 다른 법, 특히 다른 성보호에 관한, 성폭력 등 관련 법하교의 형평성, 상호 저촉된다거나 이 점에 대해서 법무부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수정안이 마련된 겁니까?

○전문위원 박철규 예, 여성가족부 담당자들과 법무부하고 협의가 되어서 그 안을 가지고 어제 대체토론에서 문제제기하였던 위원님들께 보

여 드리고, 그 안을 마련해서 가져와서 저희들이 그 안을 전문위원실에서 검토 결과 이상이 없었습니다.

○위원장 우윤근 그 점과 관련해서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박준선 위원께서도 문제제기를 하셔서 가지고, 7조의2 신설 조문은 삭제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 제시였는데, 그게 반영이 됐던가요?

○전문위원 박철규 예.

○위원장 우윤근 그리고 7조의3 형법상 감경규정에 관한 특례규정 조문은 현행 규정대로 하기로 하고, 또 7조의4 공소시효 적용배제 규정은 삭제하고, 7조의3제3항을 신설한다고 했는데, 신설된 내용이 어떻게 수정됐습니까?

○전문위원 박철규 이 부분은 성폭력 처벌 특례법하고 상충된다고 해서 성폭력 처벌 특례법의 조문과 같이 맞추었습니다.

○위원장 우윤근 동일하게?

○전문위원 박철규 예, 다만 그쪽 특례법에는 강간죄 이 부분만 나와 있는데 이 법에서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강간하거나’, 약간 풀어 쓴 그 부분만 다르고 사실상 내용은 같습니다.

○위원장 우윤근 우리 위원님들 한번 보시지요. 이게 굉장히 너무 빨리 입법 심사를 하다 보니까 좀 신중해야 될 것 같은데요.

법사위 이번의 수정안 전부 다……

이두아 위원님이랑 박준선……

○朴俊宣 委員 검토했습니다.

○위원장 우윤근 검토했습니까?

16조3호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부분만 이거 피해자 고소 없이 공소제기 할 수 있도록, 이 부분도 검토가 됐습니까?

○朴俊宣 委員 (고개를 끄덕임)

○이두아 위원 (고개를 끄덕임)

○위원장 우윤근 예, 됐습니다.

다른 분들이 대체토론하실 분이 안 계시기 때문에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고 의결은 잠시 미루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은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면 의결정족수가 되는 대로 하고, 장관께서는 일단 가셔도 되겠습니다.

77. 이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안(허원제 의원 대표발의)(허원제·유정현·남경필·정의화·이명규·이진복·손숙미·이한성·홍정욱·

정병국·최구식·유기준·원희룡·원희목·이경제·안홍준·안상수·이성현·강승규·김용태·김옥이·한선교 의원 발의)

78.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을동 의원 대표발의)(김을동·홍사덕·이한성·유성엽·이명수·이사철·노철래·조경태·신상진·김성동·김태환·정해걸·정미경·조진래·한기호·한선교·진성호·최종원·조윤선·김재윤·조진형 의원 발의)

79.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전병헌 의원

대표발의)(전병헌·김우남·김재윤·김학송·김부겸·조영택·유선호·김춘진·최규성·홍영표·백재현·전혜숙 의원 발의)

80.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장 제출)

81.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

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장 제출)

8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장 제출)

8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장 제출)(계속)

84.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장 제출)(계속)

85. 관광숙박시설 확충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안

(조윤선 의원 대표발의)(조윤선·유기준·원혜영·고홍길·이정선·이범래·나경원·강용석·이두아·김성동·이병석·구상찬·박준선·권영진·홍사덕·조진형·나성린·박진·이한성·정두언·한선교·허원제·이철우·진성호·장광근·황영철·신성범·김성수·조진혁·이춘식·유일호·이은재·이사철·배은희·진영·임동규·최경희·이성현·김금래·황진하·김장수·이정현·강명순 의원 발의)

(18시07분)

○위원장 우윤근 이어서 다음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7항 허원제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안, 의사일정 제78항 김을동 의원이 대표발의한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79항 전병헌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80항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81항 국민체육진흥법 일

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82항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83항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84항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85항 조운선 의원이 대표발의한 관광숙박시설 확충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안, 이상 9건의 법률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상 7건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겠습니다.

○전문위원 문광섭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78항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이 개정안은 문화예술교육사의 배치 등에 관한 내용으로서 문구의 정리 외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79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이동통신 요금의 과다 청구로 인한 문제 예방을 위하여 약정 요금 한도를 초과하는 등의 경우 이동전화사업자로 하여금 이용자에게 알려주도록 하는 내용으로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80번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이 개정안은 외국간행물의 수입추천제를 폐지하고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을 설치하는 등의 내용으로서 지방자치단체 기재 순서 등 문구를 정리하는 외에 별문제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81번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체육지도자 자격제도를 개선하고 불법적인 스포츠도박 관련 금지행위를 구체화하고 벌칙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검토 결과 개정안은 벌칙규정에 체계와 자구가 모순되는 점이 있으므로 별도로 금지행위 규정을 신설하는 등 금지행위와 그에 대한 처벌규정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그 외에는 경미한 자구 수정을 하였습니다. 상세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순서상 77번 법률안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안입니다.

정보화 시대에 신문화로 부각되고 있는 이스포츠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근거를 정하는 내용입니다. 체계 및 자구를 검토한 결과 안제2조에서 이스포츠의 정의규정을 정비하였고, 3

쪽입니다, 이스포츠 종목 선정기관 지정의 취소에 관하여 제재적 처분으로서 법률에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아 이를 정비하였으며 청문 규정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법체계에 맞게 조문과 자구를 수정하였습니다. 상세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2번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영화진흥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관련 규정을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과 일치시켜 통일성을 기하고 멀티방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서 검토결과 부칙에서 수수료 면제에 관한 적용례 등을 정비하였고 기타 경미한 자구를 수정하는 외에 별다른 문제가 없었습니다.

85번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안입니다.

이 법안은 외국관광객에 대한 관광숙박시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호텔업을 경영하려는 자에 대한 지원이나 특례 등을 정한 내용으로서 검토 결과 인허가 의제 규정을 명확히 하고 경미한 문구를 수정하는 외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었습니다.

83번, 84번 법률안은 어제 보고드린 법률안에 대한 계속검토 사항입니다.

(이상 7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우윤근 검토가 끝났습니까?

어저께 수정,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왔는데 그 점에 대해서……

○朴俊宣 委員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우윤근 박준선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朴俊宣 委員 어제 문제 제기를 하신 위원님이 신지호 위원님이셨는데 가시면서 저에게 위임을 하고 가셨습니다.

그래서 어제 문제 제기한 신지호 위원님께서 이것을 게임물 등급분류 심사를 민간에게 위탁을 하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다라고 하면서 게임사 관계자들이 관여를 하게 되면 오히려 주객이 전도된다고 해 가지고 민간에게 위탁을 하되 부대의견으로 게임물 민간등급심사기관에 게임사 관계자가 3분의 1을 넘지 않도록 구성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 포함되도록 했습니다.

이것을 아직 전문위원님 못 받으셨나요?

○전문위원 문광섭 아직 못 받았습니다.

○朴俊宣 委員 민간전문가를 과반수 이상 포함하도록 고시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문서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그대로……

○**위원장 우윤근** 장관께서 부대의견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시는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예, 알고 있습니다.

○**朴俊宣 委員** 이것 문광부에서 다 한 안이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다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동의합니다.

○**위원장 우윤근** 됐어요? 부대의견을 달아서 통과……

우리 위원님들한테 좀 알려드려야 될 것 같아서 동의를……

○**이용희 위원** 문광부에서 갖고 있는 안 없습니까?

○**위원장 우윤근** 그 내용을 부대의견으로 지금……

○**이용희 위원** 무슨 부대의견?

○**위원장 우윤근** 게임물 민간등급분류기관의 구성에 대해서 여기 보니까 굉장히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장관님 한번 설명 들은 대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기본적으로 위원님 의견은 민간에 위탁했을 때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어저께 그랬는데 게임산업 특히 이해관계자가 너무 많이 들어가면 안 되니까 3분의 1 이상을 넘지 않도록 한다 그게 기본입니다.

○**노철래 위원** 3분의 2입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1입니다. 예를 들어 시민단체라든지 학부모라든지 이렇게 들어가야 거기가 제대로 되지 않겠는가……

○**이용희 위원** 그러면 지장이 없는 거예요? 지장이 없어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저희도 기본적으로 이렇게 게임업자들을 많이 넣을 생각은 없었습니다.

○**위원장 우윤근** 그 점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

○**노철래 위원** 위원회 전체가 9명으로, 몇 명으로 구성되나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인원은 정해져 있는 않은데요.

○**노철래 위원** 아직 정해지지 않았어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예.

○**노철래 위원** 그러면 몇 명으로 하되 3분의 1로 할 것이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예, 3분의 1.

○**이용희 위원** 실무국장, 얘기해 보세요.

○**문화체육관광부콘텐츠정책관 김갑수** 문화체육관광부 콘텐츠정책관 김갑수입니다.

위원님께 다 설명을 드려 가지고 저희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부대의견으로 하기로 다 동의했습니다.

○**이용희 위원** 다 동의한 거예요?

○**문화체육관광부콘텐츠정책관 김갑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우윤근** 다른 위원님들도 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지금 수정, 기재부장관 의견과 우리 장관님의 합의가 아직 덜 됐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예, 합의가 안 됐습니다.

○**기획재정부장관 박재완** 저희가 어제 지침을 주신 뒤에 수정안을 만들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정부출연연구기관 육성법의 취지에 배치되는 방향으로 각 부처가 출연연구기관 또는 국책연구기관을 신설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하는 취지에서 현재 광주과학기술원 산하에 있는 문화콘텐츠기술연구소에서 신설하고자 하는 문화기술연구기관을 함께 수행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저희들이 전국적으로 봤을 때 가장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고 또 브랜드 가치가 있기 때문에 우수한력을 유치하고 발전 가능성이 높은 쪽으로 신설을 통합해서 하게 되면 구멍가게처럼 한 지역에서 2개의 연구소를 운영하는 것보다 훨씬 큰 규모로 융복합 연구를 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광주시와 기획재정부는 이 방안을 지금 선호하고 있는데 문화관광부에서는 원안을 유지하고자 하는 의견이고요. 지금 발의하신 장병완 의원님은 아직 입장을, 오전에는 동의하셨다가 오후에 조금 유보하신 그런 상황입니다.

○**위원장 우윤근** 제가 확인을 했는데……

이은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李恩宰 委員** 아까 저도 장 의원님을 뵈고 말씀을 드리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어저께 저희가 사실은 오늘까지 이것을 두 부처가 합의를 해 가지고 오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두 부처가 결국 합의가 안 돼서 제가 볼 때는 시간이 필요하든지…… 지금 이것이 2소위로 넘어가

서 시간을 가지고 타협점을 두 부처가 찾든지 이러는 것이 저는 타당하다고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제 본 위원이 2소위에 넘겼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타협을 해 가지고 오시겠다 그래서 사실 오늘 다시 전체회의에 이것이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늘 이렇게 두 부처가 합의가 다 안 됐으면 어쩔 수 없이 2소위로 넘어가서 그동안에 여러 가지 절충점을 찾아 가지고 시간을 갖고 하시는 게 맞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우윤근** 그 점에 대해서 제가 관련 소관 상임위원회의 입장을, 전체적으로 다 들은 것은 아닙니다. 그쪽에서는 이게 정책에 관한 부분이니까 만일에 협의가 안 되면 원안대로 통과해 달라라는, 장병완 대표의원도 그렇게 전언이 왔습니다.

이것이 입법 정책에 관한 거고 체계에 관한 게 아니니까 그냥 원안대로 해 주십사 하는 게 요청이고요. 광주시장하고도 제가 통화를 두 차례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기획재정부 의견을 상당히 받아들이려고는 합니다. 그러나 가급적이면 원안을 유지해다오 하는 거라서 광주 쪽에 이해관계가 좀 있나 봐요. 그래서 그쪽에서는 원안을 유지해서 해다오 하는 게 문방위 쪽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루 더 시간을 줘서, 이게 입법정책에 관한 거니까 법사위가 이렇게 저렇게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어서…… 입법 발의한 쪽 의원들은 안 되면 원안으로 해 다오 하는데 하루 더 시간을 조율해 보도록 하고……

이정현 의원님 발언하시지요.

○**이정현 위원** 어떤든 부처 간에 이견이 없도록 협의를 해서 합의를 해 오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안이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양측의 주장의 차이점을 봤더니 말하자면 광주과기원에 문화기술연구소를 두되 광주과기원에 있는 그 연구소가 거점기능을 수행하게 한다, 말하자면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아까 장관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좋은 고급두뇌들도 갖추어져 있고 기존에 다 있기 때문에 과기원이 최적이고 거기다가 연구소를 두되 거점기능을 수행하게 한다 이렇게 하는 거고, 광주시나 이쪽의 의견은 광주과학기술원에 아예 그냥 연구원을 설치할 한대로 끝내지 않고 거점기능을 수행한다 그러면 거점기능이 아닌 다른

기능들은 또 분산해서 뭐 서울에서 대전에서 이렇게 하는 그런 부분들의 의혹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획재정부장관 박재완** 제가 광주시장님하고 수차례 오늘 통화를 했었는데요. 저희들 최종 만든 것을 법사위 전문위원님께서도 드렸습니다. 수정안에는 거점기능이 없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최초의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연구단으로 1안이라는 것을 당초 안으로 제안했을 때 나왔던 얘기이고요. 그리고 나서 다시 저희들이 수정안을 만든 것에는 ‘광주과학기술원법에 따른 광주과학기술원 산하기관을 문화기술연구기관으로 지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점이라는 내용은 빠져 있습니다.

○**이정현 위원** 기존에 있는 것에, 그러니까 연구원을 따로 설치를 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에 있는 것을 활용을 한다는 그 차이점……

○**기획재정부장관 박재완** 기존에 있는 연구소를 이 법에 의한 전문연구기관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거기에다가 부대의견으로 필요하시다면 ‘정부가 집중적인 지원을 한다’라는 의견을 달 수도 있겠습니다.

○**이정현 위원** 제가 문방위에 있을 때 2008년도부터 CT연구원 광주 유치, 설치에 대해서 줄곧 관심을 갖고 늘 질의를 하고 문제 제기를 본회의에서 예결위에서 문방위에서 해 왔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2년, 아니 3년 전에 비해서 지금 엄청난 정부 쪽에 기재부 쪽에 양보와 진전, 아주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상상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지금 굉장히 많은, 그때는 거의 불가능하고 절대 안 된다 이렇게 했었는데 아주 많이 진전이 되어 있습니다. 큰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하루 더, 조금 더 조율을 해 주시면……

○**위원장 우윤근** 예, 그러겠습니다.

거의 의견이 시장님도 접근이 된 것 같은데……

김학재 위원님!

○**김학재 위원** 제가 한 말씀 하겠습니다.

이은재 위원님, 제가 부탁 하나 하려고요.

이게 물론 기재부장관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 광주 쪽에서는 한국문화기술연구원 이것을 하나 유치를 하고 싶어해요. 그게 지역의 숙원사업인데 존경하는 이은재 위원님이 광주를 사랑하시는

마음에서 하루는 묵혀두고 내일은 너그럽게 좀 통과를 시켜 주세요.

○**위원장 우윤근** 한 번 더 협의하도록 할게요.

○**李恩宰 委員** 제가 완전히 악녀가 된 것 같은 느낌인데 사실은 어제도 보고 이러니까 어제 기재부장관께서 밤에 늦게 잠깐 말씀이 되셨고 그래서 어제 밤늦게라도 두 부처가 합의가 된 줄로 알고 있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하루를 늦춘 건데 그러니까 어제부터 저는 이것이 그렇게 시간적으로 금방 될 것 같지 않아서 2소위로 넘겼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이춘석 간사가 저보고 내일 다시 본회의에 올려 가지고 그것만 좀 양보를 해 달라 계속 그랬고 그다음에 전반적으로 그 내용하고 보니까 지금 문광부에서는 이와 같은 것을 너무 소규모적으로 생각하는 것 같고 그다음에 기재부에서는 어차피 이것 하는 거니까 큰 틀을 만들어 가지고 하는 게 좋지 않겠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커다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오늘 저녁에 두 분께 시간을 드려도 이것이 근본적으로 예를 들면 우리 문화관광부장관님께서 양보를 하지 않는 한 이게 지금 상당히 어렵지 않겠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 그러시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두 장관님, 오늘 저녁에 이것이 합의가 될 사항입니까?

○**기획재정부장관 박재완** 저희는 하여튼 최대한 수정안을 만들어서 절충을 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제일 걱정하는 것이 솔직히 광주에 대한 애정으로 이렇게 구멍가게처럼 새로운 기관을 정부 부처 밑에 만들어 놓고 사람 몇 두고 예산 절끔 넣어서 그렇게 단편적으로 운영하는 것보다는 이미 세계적으로 명성이 나 있는 광주과학기술원에 충분한 예산을 지원해서 융복합 차원에서 문화콘텐츠를 적극적으로 연구하는 것이 우수 인재 유치에도 유리하고 광주를 위해서도 더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구요.

무엇보다도 법사위에서 초점을 두고 심의해 주실 점은 정부출연연구기관 육성 지원법의 취지와 부합하느냐 여부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정부출연연구기관은 잘 아시는 대로 전부 정부출연연구기관법에 리스트 업(list up)이 되어 있고 그 법에 의해서 관리되고 육성되는 것이 그 법의 취지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제가 결코 광주를

소홀히 하거나 그런 뜻은 아니고요.

정확하게 말씀을 또 드리자면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이 개정안 원안이 통과가 된다면 사실은 이 연구원이 광주에 100% 간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공모를 거쳐서 어느 지역으로 갈지는 알 수 없는 상황인데 저희가 낸 수정안처럼 해 주시면 광주 지역에 확실히 보장이 되는 것이니까 더 도움이 되겠다 하는 점 말씀 올립니다.

○**위원장 우윤근** 기재부장관님 오늘, 어제 이 법사위에 나와서…… 워낙 장관님이 탁월하게 일을 잘하시니까 나무라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워낙 잘하시는데 사실은 이런 것들은 소관 상임위에서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정책적인 분야가 많습시다.

그런데 우리 기재부장관이 법사위에 나와서 지금 120% 능력 발휘를 하고 있어요. 농해수위 법안에 대해서도 죽, 물론 그것이 아무런 사심이 없기 때문에 받아들입니다. 또 문광위 법안에 대해서도 여기 와서 지금 법사위원회에서, 사실은 그 소관 상임위 심사할 때 그런 부분을 미리 상의하는 것이 맞는데 마지막 이 법사위원회에 오셔서 이야기하는 것 워낙 나라를 아끼는 마음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크게 토를 달지는 않겠습니다마는 그러한 부분들은 입법 취지라고 말씀하셨지만 또 좁히면 정책에 관한 부분들이 솔직히 많습시다.

어저께 농해수위 법안도 법사위에서 밀을 넣고 보리를 넣고 마늘을 넣고 이것은 법사위 소관 사항은 솔직히 아닙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고추하고 마늘을 넣느냐 마느냐 여기 와서 관철을 우리 기재부장관께서, 물론 사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 받아들였습니다마는 이 부분도 지금 문방위 위원들은 난리입니다.

와 가지고 계속 딜레이하고, 그러나 조율하는 것이 저희들 법사위가 마지막에 그래도 좀 조율할 필요가 있다 해서 하고 있는 건데 하루 더 해서……

제가 광주시장하고 연락했더니 상당히 접근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나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넘어온 상임위 중심의…… 국회의원 해 보셨지 않습니까, 17대 때? 그 점도 존중해야지 법사위에서 매번 이러면 욕을 다 법사위원들이 얻어먹고 또 소관 상임위에서 법안 심의가 굉장히 소홀하게 돼서 다 법사위원회에 와서 어필하게 되기 때문에 그 점으로 해서 그것은 그 정도로……

○이정현 위원 위원장님, 하나 좀……

○위원장 우윤근 예, 말씀하시지요.

○이정현 위원 저는 기재부장관 말씀 들으면서 굉장히 중요한 것에 의문이 생겼습니다.

문광부장관님, 지금 올라온 이 법안대로만 그냥 하면, 지금 기재부에서 낸 수정안 말고 그냥 하게 되면 CT연구원이 공모로 하게 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되어 있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공모……

○이정현 위원 CT연구원을 이 법이 어느 지역으로 간다, 광주로 간다라고 못 박지 않고 아까처럼 국가출연기관이라든가 국책연구기관 이런 규정대로 해 가지고 지역 명시하지 않고 그냥 공모로 하게 되어 있느냐 묻는 겁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그러면 심사를 해서 지정을 해야 됩니다.

○이정현 위원 공모로 하게 되어 있어요? 광주가 지정이 되어 있지 않아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예.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이 독립적인 것이냐 아니면 광주과학기술대학이건 어느 과학기술대학의 부속으로 가느냐 그 차이가 큰 차이입니다.

○이정현 위원 지금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장관님, 말하자면 2008년이나 2009년도에 앞선 두 장관님 시절에도 이 CT연구원의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아 가지고 그때 결정을 못 한 것이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그것은 굉장히 다른 문제입니다. 장병완 의원이나 광주시장을 포함한 광주 시민들이 얘기하는 것하고 굉장히 큰 차이점이 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이 부분을 가지고 지금처럼 이렇게 CT연구원을 설립하기로 해 가지고 출연연구기관이나 국책연구기관의 기준에 의해서 공모를 하게 되면 보장이 없기 때문에, 광주로 간다는 사실은 보장이 없다 하는 많은 여러 가지 자료들을 그때 제시를 했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은 상당히 신중하게 생각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광주 같은 경우에는 문화중심도시라고 하는 그 특별법에 의해서 아까처럼 투자진흥지구를 만들고 그리고 CT연구원을 유치하고 아시아문화전당을 짓고 이런 3대 사업 추진을 지금 목표로 하고 추진하고 있는데 공모를 했을 경우에는 아까 그 부분이 꼭 광주에서, 가장 핵심적

으로 얘기하는 그런 3대 사업이 광주로 간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제가 지금 장병완 의원하고 얘기를, 입법 발의자하고 얘기를 안 해 봐서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그 부분은 상당히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장관님 입장에서는 ‘그냥 뭐 좋다. 우리 문화체육관광부 입장에서는 출연연구기관, 국책연구기관 그런 규정에 의해서 이 CT연구원 유치를 이 법안을 통과해서 하나 했으면 좋겠다’라고 지금 생각을 할 수가 있으시지만 사실 이 문제를 꾸준히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데는 광주였거든요. 이 법안을 통과시켜 가지고 이것이 대덕연구단지, 카이스트가 있는 대전이나 또는 서울에 많은 유사한 그런 대학이 있어 가지고 서울이나 이런 데서 공모해서 여러 가지 기준에 의해서 만약에 그렇게 되게 된다고 그런다면 광주 사람들은 완전히 뭐 해 가지고 그냥 뭐 주는 격이 되어 버리는데, 그 부분을 지금 가볍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물론……

○李恩宰 委員 잠깐만요.

위원장님, 저 발언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우윤근 예, 이은재 위원!

○李恩宰 委員 지금 제가 파악을 해 봐도 그렇고 우리 장관님께서 이 법안이 문방위에서 통과가 됐기 때문에 법사위에서 그냥 좀 통과를 했으면 좋겠다 지금 이런 의도를 가지고 계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 이정현 위원도 지적을 한 것처럼, 이것이 꼭 광주로 간다는 보장은 없거든요. 그러나 문방위에서 이 법안을 맨 처음부터 스타트를 한 것은 광주에 문화예술에 관한 것을 한번 더 크게 만들어 보겠다 이런 뜻으로 한 것으로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아까 기재부장관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 광주과학기술원에다가 이와 같은 문화예술을 포함을 시켜서 아예 단지를, 굉장히 커다란 어떤 그것을 만들겠다 이런 말씀이기 때문에 기재부장관의 말씀대로 하면 이것은 마땅히 광주로 가는 겁니다. 더 정확도가 높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것을 그냥 계속 해서 고집하려 하지 마시고 사실은 광주라는 도시를 잘 키운다라는 생각에 이것을 2소위로 넘겨서 좀 시간을 갖고 여러 가지 구상을 하고 일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지금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우리 장관님께서 양보를 좀 하셔야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그런데 저희 입장 은요, 당초 한국문화기술연구원 취지가 R&D를 종합적으로 수행하는 독립적인 연구기관 설립이 주된 목적입니다. 그리고 그런 목적을 가지고 상임위 문방위에서도 법안을 통과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것이 달라지게 되면 우리는 다시 상임위의 동의를 얻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李恩宰 委員 그러면 나중에 상임위에서 하고, 이것이 국가적으로 여러 가지 단지를…… 이것 하면 꼭 거기 간다는 보장이 없어요. 기존에도 말씀……

○위원장 우윤근 위원님, 이렇게 하시지요.

하여튼 하루 정도 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광주시장은 좀 의견 접근이 된 것 같은데……

○기획재정부장관 박재완 예, 시장님은 저하고 통화하실 때는 기재부가 낸 수정안을 수용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위원장 우윤근 장병완 의원도 전직 장관이니까 잘 통하지 않습니까?

○기획재정부장관 박재완 예, 그런데 지금 연락이 안 되서 가지고요, 오전에는 수용하시겠다고 그랬는데 오후에는 광주시장님한테 좀 상의해서 동의를 받아라 그러셔서 제가 시장님하고 몇 차례 해서 동의를 받았는데 이후에 연락이 안 돼……

○위원장 우윤근 하여튼 좋습니다. 저녁 때 다시 한번 연락을…… 내일 오전까지 시간 드리겠습니다.

의결은 보류하도록 하고요.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지금 여차피 의결은 안 될 것 같습니다.

86.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환 의원 대표발의)(김태환·박보환·이철우·정희수·정해걸·김을동·최구식·정갑윤·이명규·박민식·이정선·배은희·이사철 의원 발의)

87.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지식경제위원장 제출)

88.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지식경제위원장 제출)

89.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90.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지식경제위원장 제출)

91.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노영민 의원 대표발의)(노영민·최규성·강창일·주승용·김재균·유선호·김창수·문학진·박우순·이찬열·전병헌·송훈석·김진표·홍재형·김영환 의원 발의)

92.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균 의원 대표발의)(김재균·노영민·주승용·강창일·김동철·양승조·박주선·장세환·전병헌·김상희 의원 발의)

93.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지식경제위원장 제출)

94.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지식경제위원장 제출)

95.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96.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97. 공공보건의료에관한법률 전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98.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99.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100.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18시36분)

○위원장 우윤근 의사일정 제86항 김태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87항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88항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89항 정부가 제출한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90항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91항 노영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92항 김재균 의원이 대표발의한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93항 대·중소기업 상생협

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 의사일정 제94항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95항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96항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97항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98항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99항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100항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상 15건의 법률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상 15건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겠습니다.

○전문위원 문광섭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86항,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개정안은 고압가스의 사전·사후 수입신고를 변경하는 내용으로서 경미한 자구 수정 외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87항,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유사석유제품 관련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의무사항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으로서 부칙에서 개정규정의 적용례 등 규정을 정비하고 경미한 자구를 수정하는 외에 별다른 문제가 없었습니다.

88항,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법률 개정안입니다.

대덕연구개발특구 외의 연구개발특구를 추가 지정하게 됨에 따라 범명을 변경하고 연구개발특구 지정 절차 및 해제사유 등을 구체화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개정안 제3조에서는 다른 법률과의 우선 적용 관계를 규정하고 있으나 해석상 오해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문구를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사업시행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이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중대한 위반행위로서 다른 일반 입법례와 같이 반드시 지정을 취소하도록 함이 타당하다고 보아 수정하였습니다.

그 외에 경미한 자구 수정을 하였습니다.

89항,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국민 중심의 원칙적 허용 인허가 제도 도입방안에 따라 제도를 개선하는 등의 내용으로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90항,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로봇산업 투자자에 대한 조세감면과 지원 관련 규정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서 경미한 자구 수정 외에 별다른 문제가 없었습니다.

91항,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엔지니어링사업자 공제조합이 필요한 공제사업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서 경미한 자구 수정 외에 별다른 문제가 없었습니다.

92항,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인증신제품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구매책임자를 지정하는 등의 내용으로서 경미한 자구 수정 외에 별다른 문제가 없었습니다.

93항,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동반성장위원회를 법적 기구로 명시하여 그 기능을 수행하면서 중소기업 적합업종을 공표하거나 사업 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등의 내용으로서 체계 및 자구를 검토한 결과 경미한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중소기업 적합업종의 개념과 관련하여 개정안에서 서비스업을 포함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이는 내용상 당연하여 불필요하고 오히려 해석상 논란의 소지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이를 삭제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을 수 있음을 참고로 보고드립니다.

94항,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대규모 점포 등의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서 체계 및 자구를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용희 위원 그게 아닌데 왜 별다른 것이 없다고 그래요? 농협 농수산물 판매장 같은 것은 아니지요.

○전문위원 문광섭 예.

이어서 95항 계속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우윤근 예, 보고하십시오.

○전문위원 문광섭 방금 말씀드린 94항 유통산업발전법에 대해서는 내용적으로 일부 이견이 있습니다. 추후에 또 보고드리겠습니다.

95항,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의료원을 신설하는 경우 보조금을 지원받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지방의료원의 위탁운영 여부를 지자체 조례에 따르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서 경미한 자구 수정 외에 별다른 문제가 없었습니다.

96항,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입니다.

생명윤리 정책의 영역을 확대하고, 생명윤리위원회 등 생명윤리 인프라 확대를 위한 법적 근거를 강화하는 등의 내용으로서 개정안 중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는 임의적 취소사유가 아닌 필요적 취소사유로 규정함이 타당하다고 보아 수정하였고, 그 외의 경미한 문구 수정 외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었습니다.

97항,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입니다.

민간 의료기관도 공공보건의료를 수행할 수 있도록 공공보건의료체계를 개선하고, 재정적·행정적 지원이 가능하게 하는 등의 내용으로서 경미한 자구 수정 외에 별다른 문제가 없었습니다.

98항,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자연장 활성화를 위하여 종중·문중자연장지 조성 허가제를 신고제로 전환하고, 기초생활수급자 등의 공설 화장시설 사용료를 면제해 주는 등의 내용으로서 경미한 자구 수정 외에 별다른 문제가 없었습니다.

99항,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개정안은 성범죄의 신고 및 성범죄자의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이나 취업 제한에 관하여 대상 성범죄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성폭력범죄로 규정하고 있으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범죄자도 그 대상으로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고 보아 이를 반영하여 수정하였습니다.

그 외에는 경미한 자구 수정을 하였습니다.

100항,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시·도 단위 광역자활센터를 설치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상세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15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우윤근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체토론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준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朴俊宣 委員 지경부장관님!

94항의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게 의무휴업일 및 영업시간 제한 등에 관한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이것이 지금 농수산식품부와 협의가 다 됐습니까?

○지식경제부장관 홍석우 농수산식품부에서는 특별히 저희 지경위에다가 의견을 제시한 것은 없습니다. 이것은 그냥 대형마트 규제 차원에서 지경위에서 합의가 된 그런 안이 되겠습니다.

○朴俊宣 委員 지경위에서도 합의가 안 됐다던데요?

○지식경제부장관 홍석우 합의 됐습니다. 지경위에서 통과가 된 안인데요.

○朴俊宣 委員 지경위에서 합의가 안 되고, 지금 한나라당 위원들 간에 이견이 있는 가운데서 그냥 처리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농협에서 지금 농수산물의 경우에는 하루 의무휴업일 때, 농수산물이라는 것이 유통기한이 짧지 않습니까?

○지식경제부장관 홍석우 예, 그렇습니다.

○朴俊宣 委員 그래 가지고 농수산물 위주의 농협 판매장에 이것이 그대로 적용될 경우에는 손실액이 매우 크다, 그래서 농수산물 판매 비중액이 51% 이상인 점포는 제외하는 단서조항이나 이런 것이 들어갔어야 되는데 그것도 안 된 상태에서 됐다라고 해서 농협이나 농식품위, 지경위에 있는 한나라당 의원들이 아까 여기 찾아와서 항의하고 그랬어요,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장관님 모르세요?

○지식경제부장관 홍석우 아니요. 그것이 계속 의견들이 조율되는 과정이었지만 결국 마지막에 의결될 때는 지경위 의견으로 합의처리가 된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朴俊宣 委員 합의처리가 아니었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길게 얘기 안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내일 아침에, 오늘 어차피 의결이 안 되기 때문에 지경위에 있는 의원들하고 농수산식품부하고 한번 협의를 한 다음에 이것은, 이런 수정조항이 필요한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협의를 해서 오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에요.

○위원장 우윤근 예, 이용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요.

○**이용희 위원** 지금 박준선 위원님의 말씀에 제가 절대 동감을 하는 사항인데요. 이것은 그렇게 간단하게 넘길 사안이 아닙니다. FTA 체결로 인해 가지고 제일 피해를 보는 곳이 농수산물 부문인데 농수산물은 하루만 재워도 못 쓰는 물건이 많이 있고 하니까 최소한도 51% 이상 농수산물을 판매하는 그런 점포는 예외규정을 두는 것이 옳다고 보니까 그것을 장관이 한번 협의해 가지고 오시라고요.

그냥 이대로는 통과시킬 수가 없어요, 일단.

○**지식경제부장관 홍석우** 예, 협의는 해 보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쉬운 예로 양재동을 염두에 두면 하나로마트하고 코스트코하고 이마트, 3개가 붙어 있는데 지금 51% 이상은 예외로 둔다고 그러면 하나로마트만 영업을 하고 코스트코하고 이마트는 영업을 하지 말아라 하는 예가 되니까 이것은 아마 큰 통상 문제가 될 거라고 저희가 쉽게 생각이 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용희 위원** 꼭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朴俊宣 委員** 통상 문제요?

○**이용희 위원** 설치 목적 자체가 하나로마트하고 개인 점포하고는 다른 것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지식경제부장관 홍석우** 지금 외국계 투자회사에 관해서도 동등한 대우를 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예외조항으로 차별을 둘 수 있느냐라는 WTO 문제 이런 것이 좀……

○**이용희 위원** 예외조항을 안 만들면 법사위에서 통과시킬 수가 없어요. 그렇게 감안해서 처신하시라고.

○**지식경제부장관 홍석우** 예.

그런데 저희가 이 조항을 지경위에서 의결했을 때는 하나로마트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또 전국에 퍼져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기 위해서 사실은 대형마트가 한 달에 하루나 이틀 좀 쉬어라 이런 거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조화를 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마는……

○**이용희 위원** 어떻든 노력을 해보세요.

○**위원장 우윤근** 우선은요 박준선 위원이 또 지적을 하고 있으니까, 저도 확인하겠지만 지경위원회에서 다소 논란이 좀 됐습니까?

○**지식경제부장관 홍석우** 논란은 일부 위원님들이 됐었던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마지막에는 그냥

일단 법사위로 회부하는 것으로는 합의가 된 것으로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우윤근** 그러면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고요. 저도 위원장한테, 양당 간사한테 확인을 저도 해 보겠습니다마는……

그리고 방금 또 농수산물 관련해서는 농수산물하고도 한번 협의를 해 보시지요. 어차피 내일이게 통과되려면, 또 위원님들이 그런 문제를 지적하고 있으니까 해서……

○**지식경제부장관 홍석우**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우윤근** 또 소상공인들 입장에서는 빨리 처리해 달라고 요구가 또 굉장히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이해가 다소 상충되는 부분이 있지만 소상공인들은 빨리 통과시켜 줘라 해서 아마 지경위에서 서두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농수산물 이쪽, 하나로마트는 농협 쪽입니까?

○**지식경제부장관 홍석우** 예, 농협입니다.

○**위원장 우윤근** 그쪽하고 완전히 양쪽을 다 충족시키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마는 그래도 한번 협의를 오늘 내일 하는 과정을 해 보시고요.

○**지식경제부장관 홍석우**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우윤근** 임채민 장관도 복지부장관으로 나오셨지만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잘 알잖아요?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 예.

○**위원장 우윤근**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객관적으로. 도움이 될, 시간이 좀 있어서, 복지부장관님 죄송합니다마는 다른 능력이 있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 제가 지경부차관 시절 서부터 이 일을 했던……

○**위원장 우윤근** 글썄, 그렇다고 친정 편 무조건 들지 마시고 객관적으로……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 그 당시에 사실 대형마트와 전통시장 간의 충돌 문제에 있어서 사실 제일 걸렸던 부분이 농협의 판매망입니다. 농협의 판매망에 대해서 통제를 가하다 보면 농민들의 이익이 침해가 된다는 주장이 있고, 또 그렇다고 그래서 그것을 자유롭게 할 경우에는 아까 지경부장관 말씀하신 대로 소상공인의 그계 있어서 제 생각으로는 일괄적으로 농산물 판매비중으로 이렇게 하실 경우에는 다소 지역별로 소비자들의 편의라든지 소상공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혹시 한 번 더 그 안에서 가르는 방법은 없는지, 지역에 따라서. 이런 것을 한번 고려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하나로가 대형인 경우도 있고, 또 더 문제는 소형 농협 공판장들이 전국적으로 수천 개 있는데 그 경우와 소상공인들 간의 충돌 문제도 또 간단치 않습니다. 거기도 가격 차이도 상당히 나고 하기 때문에, 그런 점이 함께 종합적으로 고려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제가 나설 일은 아닙니다라는 위원장님께서 시간을 주셔서 주체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이용희 위원 말 잘못하면 혼나요.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 (웃음)

그러니까 최대한도로 안 하려고……

○지식경제부장관 홍석우 당초는 하나로마트의 그런 애로도 있겠다 싶어서 저희가 생각했던 것은 농수산물유통센터의 자격을 하나로마트가 받으면 매장을 분리해서 농수산물만을 할 수가 있는 것으로 양해를 하고 처음에는 추진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게 어제 법사위에서 농안법이 통과되면서 농수산물유통센터는 지자체가 반드시 투자한 그런 기관으로 한정한다고 통과해 버리는 바람에 사실은 하나로마트가 좀 어렵게 돼 버렸습니다.

○위원장 우윤근 하여튼 이 법사위가, 제가 오래 되지는 않았습니까라는 법사위에서 한 7년간 이렇게 보면 만물박사가 돼야 돼요. 다 여기 와서 마지막 입법정책까지, 아까 고추 마늘이 들어가느냐 마느냐까지 따지는 지경이 됐는데요. 원래 체계하고 자구, 위헌 여부를 심사하는 곳인데 왕왕 여기 와서 마지막 저지선이라고 생각해 가지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하기 때문에 법사위가 굉장히 머리 아픕니다. 만물박사가 되기 전에는 참 판단이 안 되는데요.

하여튼 이런 위원님들의 반대의견이 지금 표출이 됐기 때문에 이 법 통과를 위해서는 오늘 저녁, 내일 오전 중으로 다소 의견이 반영돼서 약간 수정된 의견으로 오는 것이 저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집니다.

이게 몇 분이 반대하면 통과가 좀 어렵지 않습니까, 법사위가? 날치기 하는 위원회도 아니고요.

그래서 그것은 장관께서 충분히 좀, 또 지경위원들 일부 반대하는 의견, 저도 김영환 위원장하고 의견을 나눠보겠습니다. 조금 수정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면 다소 수정해서……

○지식경제부장관 홍석우 그런데 수정한다는 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51% 농산품 취급하는 것을 예외로 한다 이런 것인데 사실 지금 외교통상부 과장도 와 있습니다마는 아마 외통부 쪽에서는 그러한 제한을 두기가 쉽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협의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우윤근 예, 한번 협의해 보시지요. 협의과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절차가. 결론이 어떻게 나더라도 협의 없이 하는 것보다 협의를 했지만 어려웠다 하는 것하고 협의 없이 했다는 것하고는 굉장히 차이가 있는 것 아닙니까? 장관이 노력을 좀 함으로써 또 양해가 되는 부분이 있고, 그냥……

그래서 오늘 내일은 필히 협의과정을 한번, 법사위에서 이런 문제가 제기됐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노력을 안 하면 내일 똑같은 상태로, 협의과정이라도 보여 주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지식경제부장관 홍석우 잘 알겠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제 소관 법률인데요. 제가 일차적으로 법제사법위원회 전문위원들 검토의견을 제가 다 수용을 하겠습니까라는 한 가지 98항의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보시면 제가 이미 상임위의 결과과정에도 속기록에 문제점을 지적한 것을 좀 남겨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렸던 사안인데요.

기초수급자들이라든지 국가유공자들에 대해서 화장시설 사용료의 면제를 하는 조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법체계상 이미 법 23조에서 화장시설에 대한 요율을 결정하는 모든 권한을 지자체장에게 위임을 해놨습니다.

위임을 해 놓은 상태에서 다시 국가가 법에서 특정 대상자에 대해서는 면제를 해라 하는 조항을 다시 넣는 것이 법체계상 맞는 것인지에 대해서 내일 의결하시기 전에 전문위원들께서 다시 한 번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대로 가도 큰 문제가 없겠다 하는 것이 법사위의 의견이라면 제가 그대로 따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순수하게 법체계상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점을 한번 봐 주십시오.

○위원장 우윤근 그것은 우리 문광섭 전문위원이 그 점에 대해서 오늘 검토해 보시고 내일 보고를, 문제점을 위원이 제기해야 되는데 장관이 제기하고 있네요, 지금.

(웃음소리)

법체계 그것을 문광섭 전문위원이 검토해 보시지요.

취지는 아셨지요?

○전문위원 문광섭 예.

○위원장 우윤근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의결은 내일로 미루도록 하겠습니다.

국무위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55분 산회)

○출석 위원(11인)

김 학 재	노 철 래	박 준 선	신 지 호
우 윤 근	이 두 아	이 용 희	이 은 재
이 정 현	정 갑 윤	황 우 여	

○청가 위원(1인)

이 주 영

○위원 아닌 출석 의원(3인)

권 성 동 홍 영 표 홍 재 형

○출석 전문위원

수 석 전 문 위 원	이	한	규
전 문 위 원	이	상	용
전 문 위 원	박	철	규
전 문 위 원	문	광	섭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기 획 재 정 부 장 관	박	재	완
교 육 과 학 기 술 부	설	동	근
제 1 차 관	맹	형	규
행 정 안 전 부 장 관			
문 화 체 육 관 광 부			
장 관	최	광	식
큰 텐 츠 정 책 관	김	갑	수
농 립 수 산 식 품 부 장 관	서	규	용
지 식 경 제 부 장 관	홍	석	우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임	채	민
환 경 부 장 관	유	영	숙
고 용 노 동 부 장 관	이	채	필
여 성 가 족 부 장 관	김	금	래
국 토 해 양 부 장 관	권	도	엽
국 가 보 훈 처 장	박	승	춘
소 방 방 재 청 장	이	기	환

산 립 청 장	이	돈	구
해 양 경 찰 청 장	모	강	인
방 송 통 신 위 원 장	최	시	중

○법원측 참석자

법 원 행 정 처 장	차	한	성
-------------	---	---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측 참석자

중 앙 선 거 관 리 위 원 회	이	종	우
사 무 총 장			